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1 추계 정책심포지움

- 일 시 : 2011년 11월 25일 (금) 13:15 -18:00
- 장 소 :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한국금융연구원
- 후 원 : 예금보험공사 / 매일경제
- 주 제 :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모시는 말씀

금융소비자보호는 이제 글로벌한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여러 이슈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최선의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011년 11월 25일(금)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계의 대출 및 보험상품 소비에 있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저소득층 대상 금융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이번 세미나에 부디 참석하시어 귀한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정 홍 주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 행사 일정 ◎

13:15-13:45	총회
13:45-14:00	등록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회사- 정홍주 (성균관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환영사- 김태준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14:20-15:50 전체사회 한창희 (국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책 심포지움 <p>제1주제: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보호 발표: 백은영 (경희사이버대)</p> <p>제2주제: 저소득층을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발표: 김성숙 (계명대)</p> <p>제3주제: 보험소비자 가용정보현황과 금융교육의 과제 발표: 지범하 (한동대)/ 이경주 (홍익대)/ 최현자 (서울대)</p>
15:50-16:00	Coffee break
16: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종합토론 <p>토론자: 주소현 (이화여대)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이건범 (한신대) 김창호 (한국소비자원)</p>
17:00-18:00	이사회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축사/사회자/발표자/토론자 소개

◆ 축사

김태준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 사회자

한창희 (국민대학교)

- 현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차차기 회장
-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재, 국민대학교 금융법연구소 소장
- 현재,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발표자

■ 제1주제: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보호

백은영 (경희사이버대학교)

- 현재, 경희사이버대 자산관리학과 교수
- 현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일반이사
- 현재, 한국소비문화학회 소비문화연구 편집위원
- 한국 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저널 편집위원
- 미국 퍼듀대학교 박사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제2주제: 저소득층을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김성숙 (계명대학교)

- 현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정보학과 조교수
- 현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운영이사
-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 박사

▪ 제3주제: 보험소비자 가용정보현황과 금융교육의 과제

지범하 (한동대학교)

- 현재,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 현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미 The King's College 경영대학장
- 미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조교수
- 대한생명보험 상무이사

이경주 (홍익대학교)

-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현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사
- 현재, 한국보험학회 이사
- 현재 서울경제신문 우수금융회사 심사위원
-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박사(보험학)

최현자 (서울대학교)

- 현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 현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 미국 퍼듀대학교 박사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토론자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 삼성 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국 Texas Tech University, Personal Financial Planning, 조교수 및 부교수
- 미국 Virginia Tech, Ph.D. in Consumer Economics (1998)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제도연구실장
- University of Michigan, Ph.D. (Economics)

이건범 (한신대학교)

- 현재,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 현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근무 (보험관련 피해구제 및 조사연구)
- 현재,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 경제학박사(보험)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1주제: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보호

발표: 백은영 (경희사이버대)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백 은 영¹⁾

I.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1년 2분기말을 기준으로 993조여원으로 거의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지난 3년 6개월간의 평균치를 크게 웃돌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2009년에는 6.2%, 2010년에는 7%대였지만 올해에는 매월 8%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1년 8월 19일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83.6조원에 불과하던 가계부채가 1천조원 가까이 증가하였으니 이는 거의 연평균 13% 정도씩 증가한 수치로 경상 GDP증가율(7.3%)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2011).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하여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에 이르자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가계부채 문제는 개별 금융소비자 또는 개별 가계의 문제이나 이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경우 결국 국가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부실이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규복, 2010; 금융위원회, 2011). 그 이유로는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건전성이나 가계의 자산상황, 총 부채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대 대출비율은 47%선이며 이에 따른 금융사의 흡수능력 등

1)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 교수

을 들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당장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개별 가계 및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더더욱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즉, 금융소비자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해 본다면 하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 보험 등 자산을 소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다른 하나가 부채 및 신용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나눌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써 두 가지 문제 중 상대적으로 보다 취약한 집단의 금융문제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부채 특성상 가계부채가 주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그동안 정부 정책 대안과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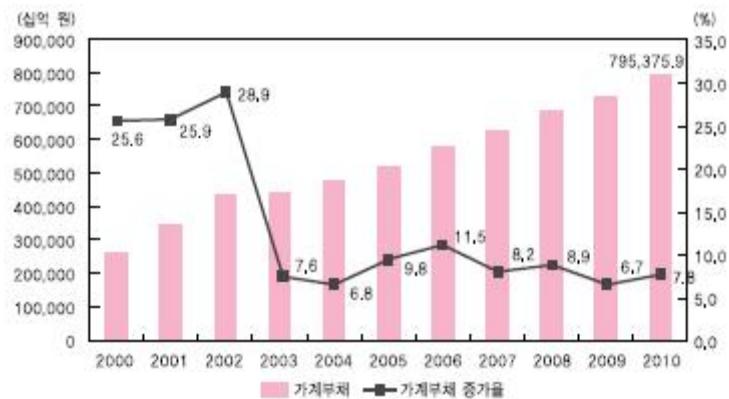
II.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2)

1. 가계부채 추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993조여원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24%정도씩 증가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2005년~2006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던 2006년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11.5%)을 보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거의 7~8%대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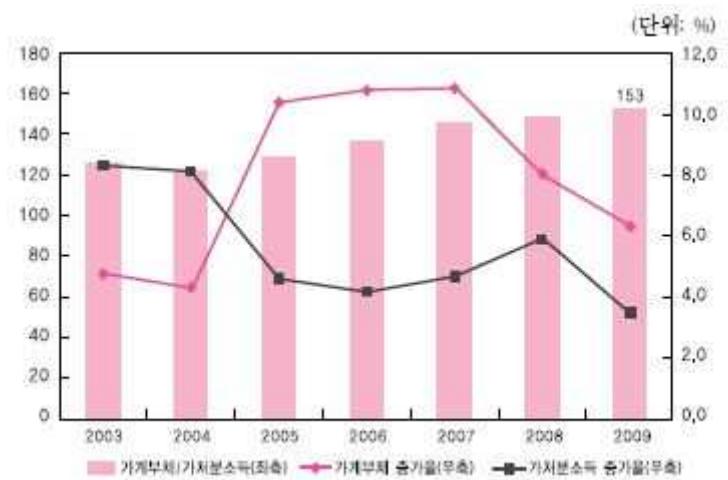
2) 본 절은 주로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이소영, 2011), 2011년 가계금융조사(통계청, 2011) 내용을 참조로 작성된 것임.

<그림 1> 우리나라 가계부채 추이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 속도를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9년말 143%에서 2010년 말 146%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159%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계속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만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추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의 137%보다 더 높은 상황이며, 가계부채로 인하여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스웨덴의 134%보다 높은 상황이다.

금융기관별로 살펴볼 때(<그림 3> 참조), 최근 들어 예금은행의 대출은 감소추세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기구 등 제2금융권 대출과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거나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써 부채 전체의 양적 증가 문제와 더불어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2분기를 기준으로 비은행권 대출의 총 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이 51.7%를 기록하여 2008년 1분기 이래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삽입



출처:가계부채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2011)

또한 대출 증가율과 대출 금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가계대출 증가율과 대출금리 사이에는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왔던 저금리 기조가 가계대출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4> 예금기관 가계대출 증가율과 대출금리



2. 가계부채 현황

2011년 가계 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1년 3월말 현재 가구당 평균부채액은 5천205만원으로 담보대출은 전체 부채 중 54.8%, 신용대출은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 보유가구는 전년 대비 3%p증가하였으며 평균부채액도 7.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 부채보유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전체 중 부채 보유가구는 62.8%였으며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40대의 부채보유 비중이 가장 높아 약 75%에 달하였고 30대 및 50대의 경우 약 71%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인 경우 약 74%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높은 부채 보유율을 보였으며, 주거형태별로 보았을 때는 자가인 경우가 전·월세인 경우보다 부채보유비율이 더 높아 약 6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보유 평균 액으로 보았을 때는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50대가 96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평균 1억1300정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위수로 보았을 때 자영업자의 부채보유 액은 4300만원 정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가구특성별 부채 보유가구비율과 보유규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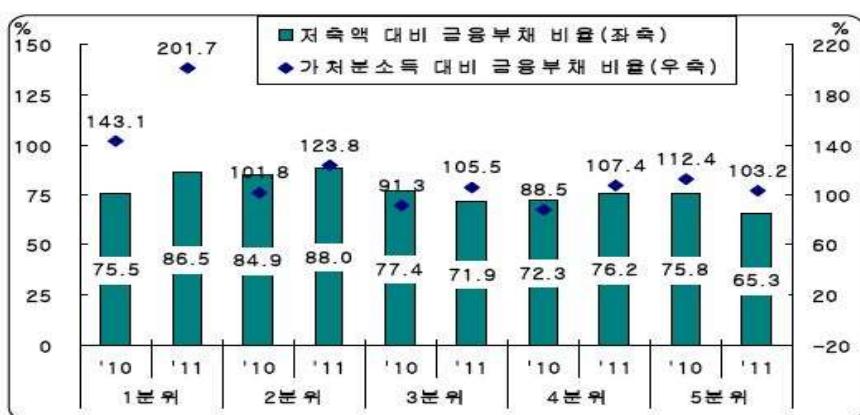
		전 체	가구주연령대별				
			30세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부채 보유 가구	비율	62.8	48.8	71.6	74.6	71.2	42.9
	평균	8,289	2,597	6,439	8,666	9,682	9,083
	중위수	3,080	1,000	3,000	3,550	4,000	2,700

<표 2> 가구특성별 부채 보유가구비율과 보유규모(2)

		종사상지위별				입주형태별		
		상용	임시	자영자	기타	자가	전세	월세
부채 보유 가구	비율	70.6	56.7	74.2	37.9	67.9	61.1	52.0
	평균	7,194	4,337	11,395	8,271	9,354	7,668	5,596
	중위수	3,200	1,500	4,300	2,950	4,200	2,800	1,130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7.5%로 작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8.3%이다.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면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10년에 비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1년에 201.7%로 전년 대비 58.5%상승하였다.

<그림 5> 소득5분위별 재무건전성 지표



출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가계부채를 용도별로 살펴보면(<표 3>참조), 담보부채는 거주주택마련,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 마련 등 부동산과 관련한 부채가 56.2%를 차지하였고, 신용대출 중에서는 사업자금마련, 생활비마련, 결혼자금 및 의료비 마련 등 기타 용도를 위해 대출을 한 경우가 많았다. 전월세보증금마련, 교육비나 생활비 마련과 같은 생계형 대출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가구주가 상용직에 있는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교육비를 위한 대출 비중이 높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있는 가구주의 가구가 생활비마련이나 부채상환을 위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구특성별 담보 및 신용대출의 용도별 비중

구 분		전체	가구주 연령 대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입주형태별		
			30세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세 이상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업자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주택 마련	담보	35.2	44.3	55.5	37.8	32.5	16.4	53.6	35.8	23.4	26.1	42.1	12.1	5.0
	전년차	0.1	-1.7	0.9	-2.6	5.6	-2.6	8.1	-2.6	-2.2	-10.9	-1.5	10.8	2.8
	신용	7.9	3.5	10.8	7.3	7.9	4.6	13.0	4.1	6.5	1.9	14.4	0.3	0.0
	전년차	1.5	0.5	-1.5	1.2	4.4	-2.4	1.5	-3.7	3.2	-1.2	2.6	-0.3	-0.2
거주주택 이외부동산 마련	담보	21.0	6.0	16.7	22.0	23.0	21.5	22.0	30.8	18.4	25.1	16.9	36.8	36.9
	전년차	0.3	0.4	-1.3	-0.1	-2.6	6.3	0.6	1.0	0.3	-1.2	1.2	-2.7	-5.0
	신용	4.3	1.5	2.5	6.7	3.8	3.2	9.9	1.1	2.0	0.4	3.0	12.2	2.2
	전년차	0.4	1.5	-2.8	1.3	0.5	1.8	0.0	-0.2	0.6	0.2	0.0	2.1	1.0
전월세보증금 마련	담보	4.1	16.3	9.8	3.7	2.1	1.6	7.6	5.1	1.3	4.8	0.5	23.2	11.5
	전년차	-0.1	-0.4	0.5	-0.7	0.4	-0.1	1.0	-1.1	-0.6	0.4	-0.1	0.3	1.2
	신용	6.9	24.8	15.8	6.6	2.2	2.4	16.1	7.8	1.6	1.2	0.6	30.1	5.0
	전년차	-0.6	-8.5	-5.6	1.2	0.7	-1.8	-2.1	0.8	0.4	-0.9	-0.2	1.7	0.9
부채상환	담보	3.0	5.6	1.7	2.4	5.1	1.9	2.3	3.7	3.3	2.9	2.5	1.1	8.9
	전년차	-0.1	3.3	0.8	-0.5	0.0	-0.7	0.1	0.8	-0.4	-0.2	-0.6	-1.0	5.4
	신용	6.0	3.8	3.5	5.5	6.9	9.2	5.1	17.8	5.4	3.1	6.7	2.8	6.4
	전년차	0.6	2.8	-2.2	-1.6	2.9	4.1	0.0	3.2	0.6	1.5	1.8	-2.0	-0.3
사업자금 마련	담보	28.4	5.7	12.4	27.1	27.7	46.8	6.8	7.8	48.4	18.3	30.5	15.5	25.7
	전년차	-1.6	-18.0	-0.5	2.6	-4.6	-4.8	-10.9	-2.4	2.8	5.8	0.0	-12.6	-1.1
	신용	31.9	10.0	21.7	41.6	27.1	41.2	6.6	28.6	58.8	8.6	36.5	19.2	30.9
	전년차	-6.1	0.3	-0.2	-2.0	-12.6	-6.4	-2.1	-6.9	-12.2	0.1	-9.8	-9.1	1.6
교육비 마련	담보	1.2	1.6	0.1	1.5	1.6	1.1	1.3	2.5	0.9	1.7	1.2	1.2	1.2
	전년차	0.3	1.2	0.1	0.6	0.0	0.5	0.2	0.7	0.3	0.6	0.4	0.5	-0.8
	신용	5.2	17.4	1.2	4.9	7.7	4.2	8.9	7.6	2.7	3.2	5.2	5.9	4.9
	전년차	0.0	10.7	-0.9	-1.9	0.9	2.5	1.7	-2.3	-0.6	-0.6	-0.3	0.5	0.1
생활비 마련	담보	2.9	16.8	1.9	2.8	2.7	3.3	2.4	7.3	1.5	9.2	2.4	3.7	5.7
	전년차	0.8	14.4	0.5	0.7	0.1	1.3	0.4	2.2	0.3	3.9	0.6	0.7	2.9
	신용	16.4	22.4	17.6	17.1	13.8	19.3	24.6	25.3	9.8	13.0	18.5	17.5	12.0
	전년차	1.3	11.2	-2.7	1.3	3.5	-0.5	-0.1	11.2	0.1	3.0	0.6	1.9	2.6
기타 ¹⁾	담보	4.3	3.8	2.1	2.7	5.2	7.5	4.1	7.1	2.7	11.9	3.9	6.2	5.0
	전년차	0.2	0.9	-1.0	0.0	1.0	0.0	0.4	1.3	-0.6	1.7	0.1	3.9	-5.5
	신용	21.3	16.6	26.8	10.3	30.4	15.7	15.9	7.7	13.2	68.6	15.1	12.0	38.8
	전년차	2.9	-18.7	15.9	0.5	-0.3	2.7	1.1	-2.2	7.8	-2.2	5.3	5.2	-5.8

주1) 증권투자자금, 결혼자금, 의료비 마련 등
출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이러한 대출은 대다수의 가구의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었는데,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74.2%였고 이 중 26.8%는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채보유가구의 원리금이 생계에 주는 부담 비율

주거 형태	부채 부담유무	합계		부담이 없다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전체		100.0	100.0	28.2	25.8	71.8	74.2	45.2	47.4	26.7	26.8	
자기집		100.0	100.0	28.2	25.6	71.8	74.4	45.7	49.0	26.2	25.4	
전세		100.0	100.0	31.0	32.7	69.0	67.3	45.7	46.0	23.3	21.3	
보증금 있는 월세		100.0	100.0	25.9	19.2	74.1	80.8	43.6	44.3	30.5	36.5	
보증금 없는 월세		100.0	100.0	15.0	16.8	85.0	83.2	30.1	39.9	54.8	43.3	
기타		100.0	100.0	23.8	25.8	76.2	74.2	44.6	44.3	31.6	30.0	

출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III.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와 대응책

1.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앞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추이 및 현황을 통하여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짚어보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절반 가량은 주택담보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율(2011년 7월말 기준)은 0.8% 수준이며 담보가치대 대출비율은 47%정도 선이고 가계대출 중 고신용 층의 대출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이규복, 2010; 김종수, 2011).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입장은 금융기관 입장이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가계부채는 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가계부채의 위험요인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취약집단의 부채 문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한국은행(2011)에 따르면, 부채 보유 가구 중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구를 과다채무가구³라 하여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과다채무가구란 ‘연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로서 경기나 금리변동, 대출관련 제도가 변할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구로 보았다.

우리나라 과다부채가구는 전체 가구 중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없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2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9.6%가 과다채무가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 3분위 가구에서도 8.1%, 소득 4분위가구에서도 7.6%가 나타나는 등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과다채무가구의 70%이상은 주택이나 부동산 소유자였고 약 58.2%는 자가거주자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인 경우가 31%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령층은 약 2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과다채무자 중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지만 일반부채가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다부채가구를 일반부채가구와 비교했을 때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과다채무가구의 대출용도는 부동산구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계형(전월세보증금, 결혼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마련, 부채상환 등) 및 사업용으로 나타났는데, 일반부채가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업용도의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보았을 때는 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부동산구입용으로는 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생계형의 경우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많았다. 둘째, 일반부채가구와 비교했을 때 비은행기관의 차입비중이 높았고 특히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차입비중이 높았다. 셋째, 과다채무가구 중 대다수가(71%) 순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 취약하나 부동산담보가액 대비 대출금액은 40%이하로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과다채무가구의 대출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다채무가구 중 대출 원금상환을 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일반부채가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3) 과다채무가구에 대한 전반부 논의는 주로 한국은행(2011)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과다채무가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과다채무가구 중 문제가 되는 가구는 저소득 가구로 주로 생계형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차입비중이 높은 가구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유동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접근에 관한 두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재무건전성을 여러 지표를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저소득, 저자산 가구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광범위하게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과다부채가구 중 원금상환 가구 비중이 일반 부채가구 비중보다 높다는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할 때 한 가지 지표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한 과다채무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원금상환이 시작된 가구들이 해당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폭넓게 분포하였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채를 지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과다채무가구 전체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취약집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이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면에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들 중에서도 대출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과다채무가구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며 이들이 금리나 경기 등 기타 외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면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채상환 능력은 낮으면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26.6%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출의 1/3이상이 2011년 하반기부터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가격이나 금리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도미노처럼 주택관련 가계대출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지고 결국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으로(연합뉴스, 2011년 10월 30일자) 예측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으로 여겨지는 사항들은 첫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최근들어 지난 3년 6개월간 평균 증가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짐작성이 있다(연합뉴스, 2011년 8월18일자). 둘째,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저

소득계층에 대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2009년말 57조원에서 지난 6월말 현재 85조원으로 49.1%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중·고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8.3%로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셋째,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09년말 237조원에서 지난 6월말 280조원으로 약 19%나 증가하여 은행권 대출 증가율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01). 또한 최근 신협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들어 30%를 넘어서고 카드론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이근태, 2011). 특히 신용등급 5등급 이하 계층의 총 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09년말 53%에서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56% 높아져(한국은행, 2001) 저소득, 저신용층의 대출 증가 및 이들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는 가계대출의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넷째,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 구입목적 보다는 전세자금마련이나 생활, 개인사업자금 마련 등의 목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의 이러한 움직임 외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변동금리형 대출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김석동, 2011)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경우 생존을 위한 자금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금융당국은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2. 가계부채 정부 대책

가계 부채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금융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부채 문제의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3월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였고 4월에는 ‘서민금융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5월에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통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6월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금융위원회, 201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계부채 적정 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둘째,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넷째,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이다.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으로는 우선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위험대출이나 편중대출에 대해 BIS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은행영업점들의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고,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대율 준수기간을 2013년말에서 2012년 6월말로 단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로 제 2금융권 가계대출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여신전문사 및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셋째,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였다.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으로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를 차등화하여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요율을 인하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대출모집인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서민금융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미소금융, 햅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고 저신용 및 저소득층의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조정과 전환대출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햅살론의 서민우대 금융자금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과다 허위대부 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여신금융협회가 온라인대출 중개기능을 수행하여 대출 중개비용을 경감하고, 신용회복지원자 중

4)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연착륙 종합대책 내용을 요약하였다.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 재활자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V. 맷음말

이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추이 및 현황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위험요인과 과다채무가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단기적, 거시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의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사안들을 중심으로 짚어보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동안의 가계 부채에 관한 대책들은 대체로 대출 공급자인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가계의 자금 수요가 어떠한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공급자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김석동, 2011). 그 한 예가 바로 지난 8월 가계대출 전면중단 조치로 볼 수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계대출이 전면중단되었으나 가계대출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전전한 대출 수요자까지도 제 2금융권으로 몰리거나 서민들의 경우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출공급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지는 못한 탓에 있다.

그러므로 향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대출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균형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거시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고(김석동, 2011), 동시에 가계부채 수요 측면에 관한 미시적 접근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수요, 즉, 왜 가계가 빚을 지는가에 관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

석하여 부채 수요에 대한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반적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부채 증가에 대한 유인 중 하나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소영, 2011).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저축은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왔고(박종규, 2011) 낮은 금리로 인하여 이자부담이 적어진 가계는 쉽게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거나 무리하게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대출을 늘릴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금리는 경기정책의 주요 수단이므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다른 경제 거시지표들과 가계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주택과 관련한 부채가 상당 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동산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장 주안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까지도 대출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생계형 대출의 증가 및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의 급증 등을 살펴볼 때, 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 문제의 심각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할 때는 어느 한 지표보다는 여러 가지 재무비율, 연체율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총량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출의 건전성 즉,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어떠한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질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증가 등(김석동, 2011; 박덕배, 2011)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및 개별 가계에 대한 금융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을 통하여 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을 물론이요, 각자의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가계관리를 하며 저축 및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부채는 지지 않게 될 것이다. 금융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가계재무구조가 개선된다면 전체 가계부채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금융교육을 통한 재무건전성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은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가되 단기적으로는 당장 대출 수요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 외에도 이자율 변동에 관한 사항, 대출에 따른 각종 수수료, 적정대출수준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채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나 어려움이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금융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동(2011).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방향. 국회보 2011년 10월호.
- 금융위원회(201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년 6월29일 보도자료
- 연합뉴스(2011). 당국초강수.. “가계대출 이대론 안된다” 2011년 8월 19일
자.
- _____ (2011). 가계취약대출 35% 1년내 만기도록.. 부실우려. 2011년 10
월 30일자.
- 이규복(2010).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19(6),
3-7.
- 이근태(2011).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 국회보 2011년 10월호.
- 이소영(2011).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KERI 정책제언. 1-13.
-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2011).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 한국은행(201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_____ (2011). 금융안정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2주제: 저소득층을 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발표: 김성숙 (계명대)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담서비스 연구

김성숙(계명대학교)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1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담 필요성

-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구조
 - 소득 및 취업 구조의 불안전성
 - 일시적이며 적은 충격의 위험조차도 대처하지 못함 : 쉽게 타격을 받음
 - 이를 극복할 자활능력을 가지지 못함
 - 금융소외계층
- 실천적인 영역에서 **재무상담은 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서비스**
 - Waddell(1999). 재무문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 고객의 지불능력과 안정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 저소득층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상담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필요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2

저소득층 가계의 범위

- 빈곤선
 - 절대빈곤선 :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
 - 상대빈곤선 : 중위소득, 40%, 50%, 60% 이하
- 규모
 - OECD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따르면 2009년도 우리나라 빈곤층 가구가 305만8000가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2009년 한 해에만 13만4725가구로 증가(조선일보, 2010.3.8).
 - 빈곤층은 1인 가구 이상까지 합쳐 집계한 2006년 269만 가구에서 최근 3년 사이 37만가구나 늘어났으며 전체 가구 수(1,692만 가구) 가운데 2006년 16.7%에서 3년 사이 18.1%로 증가
 - OECD가 이달 초 발간한 '어떻게 살고 계세요(How's Life?-Measuring well-being)' [보고서](#)(2008년기준):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60%로 잡았을 때 [가처분](#)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한국의 저소득층 비율은 20.59%
 -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50% 미만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15.2%에서 지난해 14.9%로 감소(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3

저소득층 재무상담서비스 현황

- 정부기구
 -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서비스' (s119.fss.or.kr)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재무상담사이트와 OK주민서비스
 - 미소금융 : 소액대출, 창업컨설팅, 채무조정, 취업정보, 기타(소액 보험 등)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제도) 이용시 채무상담
 - 채권집중프로그램: 상록수, 희망모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
- 비영리조직
 - YMCA연맹 등: 다중채무자 파산/신용회복 상담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4

미국의 재무상담서비스

- 미국의 전미소비자신용재단(NFCC)
 - 채무조정 등 채무관리프로그램
- AFCPE(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재무관리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
- 미국 각 주의 랜드그랜트 대학과 연계한 익스텐션 서비스(Extension Service) 프로그램
 - 유타주립대학교 가계생활센터의 재무관리 상담프로그램, 버지니아대학교의 익스텐션 서비스인 부채관리 프로그램, 퍼듀대학교의 익스텐션 서비스인 재무관리프로그램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5

일본의 재무상담서비스

- 일본에서는 각 현 및 시정촌의 지방자치단체와 그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센터에서 상담
 - 일본 카나가와현에서는 요꼬하마시를 비롯한 33개시의 시민상담실 또는 소비생활센터와 지방자치단체부서에서 이와 같은 상담을 실행
 - 상담내용은 채무정리를 위한 정보제공, 가계관리를 위한 대출과 생활경영, 전문가의 생활 재활을 위한 조언
-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JCCA)
 - 1987년 3월 변호사협회,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자 및 소비자신용업계(판매신용포함) 등이 공동으로 통상산업성의 설립인가를 얻어 발족한 민간기구
 -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담 등을 통해 다중채무자의 생활 재건 및 구제를 도모하고, 소비자신용의 건전한 이용을 계몽하여 다중 채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6

선행연구

- 부채상담교육 프로그램(최현자와 성영애의 연구,2001)
- 대학생 소비자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김경자와 흥정하, 2002; 서인주, 2003; Lyons와 Hunt ,2003; 백은영 등, 2004;정운영과 황덕순, 2006)
- 재무문제와 만족도(Wilhelm 등, 1993; Xiao, 등, 2004; O'Neill 등,2005; Kim & Garman & Sorhaindo ,2003)
- 재무상담프로그램(Dwyer. D.P., 1989; Waddell. F.E. 김경자 등 옮김,1999; Muske, G. & Winter, 2004)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7

연구문제

- 1. 저소득층 가계가 직면한 재무문제는 무엇인가? 주요 영역은 무엇인가?
- 2. 저소득층 가계는 재무상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 3. 저소득층 가계가 원하는 재무상담내용은 무엇인가?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8

연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방법 : 오프라인 조사 시 응답거부가 많음(응답율 10%)
- 2009년 5월 15일-30일까지 저소득층 500가계를 대상
- 조사대상 : 연가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가계(2009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의 월평균최저생계비(2009)인 1,105,48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배정도)
- 통계:SPSS win v.18.0, 요인분석,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종회귀 분석

저소득층가계의 유형화

소득수준 취업상태	연가계소득 10,000천원 이하	연가계소득 10,000천원초과 20,000천원 이하
비취업	최저빈곤층 (82명, 16.2%)	생계형저소득층 (135명, 27.0%)
취업	노동빈곤층 (69명, 13.8%)	성장형저소득층 (215명, 43.0%)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9

변수의 측정

변수 명	변수의 정의	척도	문항수
재무문제	현재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경험여부	그렇다 1점, 그렇지 않다 0점	34
재무상담 참여 의사	재무상담을 받아볼 의사	있다 1점, 없다 0점	1
재무상담 경험	과거에 재무상담을 받아본 경험	있다 1점, 없다 0점	1
재무상담 매체	재무상담을 받을 경우 선호하는 상담매체	전화, 방문, 인터넷, 서면, 기타	1
재무상담 방식	재무상담을 받을 경우 선호하는 상담방식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층상담, 정보제공상담, 기타	1
재무상담 기관	재무상담을 받을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상담기관	정부/지자체, 공공전문기관, 사회단체, 직장, 기타	1
재무상담내용별 참여 의사	현재 재무관리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에 관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사	소득, 소비, 지출, 저축, 부채, 보험, 투자, 세금, 은퇴 및 재무설계 전반과 제도에 대한 내용	30
연령	조사당시 만 나이	직접기입	1
교육수준	최종 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대학중퇴) ④ 대졸 ⑤ 대학원이상	1
취업여부	현재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	취업 1점, 비취업 0점	1
거주형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여부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가계소득수준	귀하와 귀하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이십니까? (각종 수입 포함)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2000만원 미만	1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10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저소득층가계유형				전체 (n=500)
		최저빈곤층 (n=81)	노동빈곤층 (n=135)	생계형 저소득층 (n=69)	성장형저소득층 (n=215)	
성별	남	44(54.3)	50(37.0)	30(43.5)	126(58.6)	250(50.0)
	녀	37(45.7)	85(63.0)	39(56.5)	89(41.4)	250(50.0)
카이제곱 = 17.220***, 우도비= 17.361***						
연령	20대	18(22.2)	39(28.9)	9(13.0)	44(20.5)	110(22.0)
	30대	13(14.4)	21(23.3)	9(10.0)	47(52.2)	90(18.0)
	40대	22(14.7)	33(22.0)	29(19.3)	66(44.0)	150(30.0)
	50대이상	28(34.6)	42(31.1)	22(31.9)	58(27.0)	150(30.0)
카이제곱 = 15.326 우도비= 15.240						
교육수준	고졸이하	13(16.0)	24(17.8)	30(43.5)	96(44.7)	163(32.6)
	전문대졸이상	68(84.0)	68(82.2)	39(55.8)	119(55.3)	337(67.4)
카이제곱 = 41.523***, 우도비= 43.524*						
직업	사무직	5(6.2)	22(16.3)	13(18.8)	70(32.6)	110(22.0)
	생산기술직	10(12.3)	22(16.3)	13(18.8)	48(22.3)	93(18.6)
	자영업	14(17.3)	30(22.2)	19(27.5)	43(20.0)	106(21.2)
	판매서비스직	9(11.1)	16(11.9)	7(10.1)	32(14.9)	64(12.8)
	아르바이트/기타	43(53.1)	45(33.3)	17(24.6)	22(10.2)	127(25.4)
카이제곱 = 76.890***, 우도비= 79.021***						
거주형태	자가	50(61.7)	68(50.4)	36(52.2)	132(61.4)	284(57.2)
	전세/월세	31(38.3)	67(49.6)	33(47.8)	83(38.6)	214(42.8)
	카이제곱 5.508=, 우도비= 5.499					

2011-11-23***p..001. ** p<.01* p<.05

금융소비자학회2011

11

저소득층가계의 재무문제

재무문제유형	문항	그렇다	는지
특별 지출 곤란	보험료, 세금, 회비 등과 같이 자주 내지는 않지만 계절에 따라 내야 하는 지출에 어려움을 느낀다.	322(64.4)	4
	크리스마스, 생일 또는 결혼기념 선물을 살 때 어려움을 느낀다.	293(58.6)	6
	자동차, 가정기기, 주택수리를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356(71.2)	2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발생할 때 자금이 부족함을 느낀다.	411(82.2)	1
	자신이나 가족이 병원이나 치과치료를 미루고 있다.	244(48.8)	9
소득 저하	다음 월급을 타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300(60.0)	5
	가계소득이 다소 줄었다.	335(67.0)	3
	저축 금액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265(53.0)	7
	식품이나 의복과 같은 필수품을 살 수 없다.	135(27.0)	20
	능력이 없어서 결제일에 제대로 지불할 수 없다.	167(33.4)	15
일상지출 곤란	가계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소득이 전혀 없다.	170(34.0)	14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을 위해 저축을 찾아 쓰고 있다.	242(48.4)	10
	의료보험이 없거나 해당항목이 거의 없어서 의료비 지출수준이 전적으로 높다.	50(10.0)	34
	현재 청구된 금액을 갚기 위해 저축을 찾아 쓰고 있다.	136(27.2)	19
	가계에 들어오는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알코올이나 약물구입에 지출하고 있다.	121(24.2)	21
생계 곤란	식품이나 집, 공공설비에 대한 입류처분의 가능성성이 있다.	82(16.4)	28
	채권자나 채무변제 대행업자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71(14.2)	29
	생존도 어렵다.	119(23.8)	22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공공설비도 이용할 수 없다.	61(12.2)	32
	월급에서 채무변제,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회수, 압류, 또는 차압을 당하고 있다.	52(10.4)	33
부채 증가	신용카드 대금이 커지고 있다.	155(31.0)	16
	은행잔고가 (-) 이다.	141(28.2)	18
	주로 현금으로 하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지금은 신용으로 구입하고 있다.	155(31.0)	16
	주택자금대출 상환액과 공과금을 합한 액수가 집으로 가져오는 소득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119(23.8)	22
	저축이나 기타 유동자산으로 갖고 있는 액수가 한 달 순소득 액보다 적다.	174(34.8)	13
채무 불이행	파산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고 한다.	62(12.4)	30
	할부상환을 한 달 이상 연체하고 있다.	67(13.4)	31
	대출 또는 기타 신용이용을 거절당하고 있다.	109(21.8)	24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에 대해 매달 최소 상환액만 갚아나가고 있다.	87(17.4)	27
	총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90(18.0)	26
고로움	매달 갚아야 하는 총 부채 상환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94(18.8)	25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	259(51.8)	8
	돈 때문에 직장 또는 인간관계를 방해를 하고 있다.	236(47.2)	11
	가족과 돈 때문에 싸운다.	177(35.4)	12

저소득층가계유형별 재무문제영역

- 재무문제 경험 : 특별지출곤란>정서적 괴로움>소득저하>부채증가>일상지출곤란>생계곤란> 채무불이행
- 최저빈곤층과 생계형 저소득층이 다른 가계유형보다 재무문제를 더 많이 경험
- 특별지출곤란, 부채증가, 정서적 괴로움은 가계유형별 정도 차이 없음

가계유형 재무문제영역	최저빈곤층 (n=81)	노동빈곤층 (n=135)	생계형저소득층 (n=69)	성장형저소득층 (n=215)	전체 (n=500)	F 값
생계곤란	.23b	.14a	.22b	.15a	.17	3.83**
특별지출곤란	.65	.62	.63	.60	.62	.52
채무불이행	.17a	.14a	.25b	.16a	.17	2.81*
소득저하	.46b	.38 ab	.42b	.31a	.37	4.57**
부채증가	.29ab	.26a	.36b	.31ab	.30	1.72
정서적괴로움	.48	.44	.52	.42	.45	1.25
일상지출곤란	.39c	.29ab	.34bc	.22a	.28	6.56***
전체	.38b	.32a	.39b	.30a	.34	3.35*

***p<.001, ** p<.01* p<.05 , 사후분석: Duncan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13

재무상담 수요

- 재무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2%, 상담참여의사 61.6%
- 저소득층가계유형별 재무상담 수요, 선호매체, 재무상담 선호기관, 재무상담 선호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변수	범주	빈도 (%)	변수	범주	빈도 (%)
재무상담 참여	예	308(61.6)	재무상담 경험	예	31(6.2)
	아니오	192(38.4)		아니오	469(93.8)
재무상담 선호매체	전화상담	42(13.6)	재무상담 선호방식	개별상담	190(61.7)
	방문상담	94(31.9)		집단상담	5(1.6)
	인터넷상담	137(44.5)		심층상담	44(14.3)
	서면상담	35(11.0)		정보제공상담	69(22.4)
재무상담 선호기관	정부/지자체	71(22.9)		기타	5(1.6)
	공공기관	152(49.4)		전체	308(100.0)
	사회단체	71(23.1)			
	직장	10(3.2)			
	기타	4(0.8)			
	전체	308(100.0)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14

재무상담내용

재무상담내용		선택	순위
재무 설계	1. 재무계획 방법과 요령	290(58.0)	6
	2. 재무상담 이용기관 및 이용방법	238(47.6)	12
	3. 자산상태 평가	276(55.2)	10
	4. 가계의 재무상태(건정성, 문제의 심각성, 안정성 등) 평가와 진단	275(55.0)	11
	5. 합리적인 자출계획세우기와 지출통제 방법	294(58.8)	5
	6. 예산 세우기 및 결산 평가 방법	278(55.6)	9
	7. 목돈마련저축	335(67.0)	1
	8. 여유자금 운영	287(57.4)	7
	9. 나에게 필요한 보험의 종류와 가입 시 주의사항	298(59.6)	4
	10. 세금의 종류와 절세방법의 이해	301(60.2)	3
신용 관리	11. 개인 신용관리의 필요성과 신용평가방법	220(44.0)	14
	12. 개인 신용에 다른 금리 결정	233(46.6)	13
	13. 대출의 종류와 특징 비교	195(39.0)	21
	14. 자신의 신용한도금액과 비용 산정하기	204(40.8)	19
	15. 부채상환을 위한 목표설정 및 방법(부채상환금액 등)	163(32.6)	25
	16. 신용불량(연체)자제도와 연체의 불이익	138(27.6)	29
	17. 과다채무의 징후와 자가진단 방법(본인의 과다채무 여부)	153(30.6)	27
	18. 개인 신용회복제도와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이해와 이용 방법	155(31.0)	26
	19. 보험해약	146(29.2)	30
자산 관리	20. 투자관련 상품과 주식 분석	217(43.4)	18
	21. 주택구입 및 부동산 투자	218(43.6)	16
	22. 은퇴설계	201(40.2)	20
	23. 연금 상품	220(44.0)	14
생계 자원	24. 상속의 방법과 상속세	153(30.6)	27
	25. 실업급여 취득 방법	218(43.6)	16
	26. 취업정보	286(57.2)	8
	27. 정부나 지역사회의 지원 알아보기	금융소비자학회 2011	2
시도	28. 신용카드 이용하기 -가입, 할부수수료와 연체 이용	184(36.8)	23
			15

재무상담내용 참여의사

- 재무설계>생계지원>자산관리>신용관리, 신용카드 순으로 높음
- 가계유형별로 원하는 재무상담내용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비교적 공통적인 재무관련 내용을 상담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
-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요 재무상담 프로그램화 용이함

가계유형 재무상담내용	최저빈곤층 (n=81)	노동빈곤층 (n=135)	생계형 저소득층 (n=69)	성장형 저소득층 (n=215)	전체 (n=500)	F값
재무설계	.50	.56	.58	.61	.57	1.47
신용관리	.32	.34	.36	.40	.36	1.36
자산관리	.36	.38	.43	.43	.40	.92
생계지원	.57	.53	.57	.55	.55	.16
신용카드	.37	.34	.32	.39	.36	.61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무상담참여#		재무상담내용									
	B (SE)	Wals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09 (.99)	17.41***	.76*** (.15)		.27 (.14)		.34* (.16)		.52** (.16)		.39* (.18)			
성별(남자=1)	-.16 (.21)	1.12	-.02 (.03)	-.02	.04 (.03)	.06	-.01 (.03)	-.02	-.03 (.04)	-.04	.06 (.04)	.08		
연령	-.04 (.01)	15.35***	-.01 (.00)	-.23*** (.00)	-.00 (.00)	-.09* (.00)	-.00 (.00)	-.11* (.00)	-.01 (.00)	-.18*** (.00)	-.01 (.00)	-.16*** (.00)		
교육수준	.5 (.05)	.85	-.00 (.01)	-.01	.00 (.01)	-.00	.01 (.01)	.05	.00 (.01)	.03	.00 (.01)	.00		
소득수준	.01 (.00)	8.33**	.00 (.00)	.07	.00 (.00)	.03	.00 (.00)	.03	.00 (.00)	.01	.00 (.00)	.01		
취업여부(취업=1)	.15 (.21)	.51	.06 (.03)	.08	.04 (.03)	.06	.06 (.04)	.07	.03 (.04)	.04	.02 (.04)	.02		
거주형태(자가=1)	.65 (.48)	1.83	.09 (.03)	.11*	.05 (.03)	.06	.11 (.03)	.15***	.10 (.04)	.13** (.04)	.04 (.04)	.05		
재무문제	생계곤란	-.56 (.53)	1.12	-.04 (.09)	-.01	-.01 (.08)	-.00	.08 (.09)	.06	.02 (.09)	.02	.03 (.09)	.02	
	특별지출곤란	.64 (.47)	1.95	.12 (.08)	.10	.06 (.07)	.05	.02 (.08)	.02	.16 (.08)	.12*	.07 (.08)	.05	
	채무불이행	.73 (.53)	1.48	.13 (.09)	.08	.41 (.08)	.30***	.13 (.09)	.09	.20 (.09)	.14*	.27 (.09)	.18**	
	소득저하	-.36 (.42)	.78	.02 (.07)	.01	.06 (.06)	.06	-.07 (.07)	-.07	.08 (.07)	.07	.06 (.08)	.05	
	부채증가	-.11 (.44)	.02	.05 (.07)	.05	.18 (.06)	.15**	.07 (.07)	.06	.06 (.07)	.04	.10 (.08)	.08	
	정서적 곤란	.33 (.36)	.58	.04 (.06)	.06	.07 (.05)	.08	.06 (.06)	.06	.08 (.06)	.08	.06 (.06)	.06	
	일상지출곤란	.45 (.36)	1.53	.12 (.06)	.09	.03 (.05)	.03	.12 (.06)	.10	.14 (.06)	.11*	.06 (.07)	.05	
	X ² 또는 F	X ² =46.12****		F=5.58***		F=14.52***		F=3.478*		F=9.53***		F=6.78***		
	R ²	Nagelkerke R ² = .12		수정 R ² = .11		수정 R ² = .26		수정 R ² = .06		수정 R ² = .18		수정 R ² = .13		

*p<.05, ** p<.01, *** p<.001, #: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금융소비자학회|2011

17

결론

- 재무상담과 재무컨설팅의 명료화
- 저소득층 금융지원(재무상담) 방향
 - 채무조정 -> 채무관리 -> 생계지원 -> 재무설계로 확대
- 저소득층 대상 재무상담서비스 확충
 -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받아 본 사람은 극히 적음
 - 현행 채무조정/취업/생계소액금융의 통합은 바람직하나 서로 융합(상호작용)이 진행되어야 함
 - 재무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현행 + 광역시 및 도청 내 소비생활센터, 사회복지기관 참여
 - 고령자보다는 중년 이하의 참여 의사가 높음
- 재무상담서비스의 정교화
 - 공통의 재무문제 => 프로그램화에 용이
 - 저소득층이 직면한 재무문제의 7가지 영역과 재무상담 내용의 5가지 추출
 - 재무문제 진단테스트 -> 재무유형 파악 -> 재무상담유형(내용/방법) 결정(능동적 상담방식)
 - 경험한 재무문제에 따라 각 재무상담내용별 참여의사가 다르므로

참고문헌

- 김경자·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 교육 내용개발을 위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22(1), 5-18.
- 백은영·배미경·이승신(2004).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8), 219-233.
- 부산YMCA(2008). 개인파산 상담내역. 내부자료.
- 서인주(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명애·최현자(2000).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가계부채문제의 규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93-207.
- 신용회복위원회(2011). 2010년도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
- 윤정혜·김경자·성명애·손상희·양세정·이희숙·최현자(2001). 소비자재무설계·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소비자학연구*, 12(3), 89-108.
- 정운영·황덕순(2006). 대학생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99-1014.
- 최현자·성명애(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35-251.
- 통계청(2011). 2010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2011.2.24일 보도자료.
- 일본 요꼬하마시 다중채무자상담센터(2009) 흥보 리플렛.
- Dwyer. D.P.(1989). *The seven stages of financial planing : A case study approach to financial planing*. Longman financial services publishing, a division of Longman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Inc.
- Garman, E.T. and Forgue, R.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M.A. : Houghton Mifflin Company.
- Kim, J. & Garman E.T. & Sorhaindo B.(2003). Relationships Among Credit Counseling Clients'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Behaviors. Financial Stressor Events, and Health.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2), 75-87.
- Lyons, A.C. & Hunt, J.L.(2003). The Credit Practices and Financial education need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2), 63-74.
- Muske, G. & Winter M.(2004).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An Alternative Paradigm.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5(2), 79-88.
- O'Neill B. & Sorhaindo B. & Xiao JJ. & Garman E.T.(2005). Financially Distressed Consumers: Their Financial Practices. Financial Well-being. and Health.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6(1), 73-87.
- Wilhelm M.S., & Varcoe K. & Fridrich A. H.(1993). Financial Satisfaction and Assessment of Financial Progress: Importance of Money Attitud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81-199
- Shipley, D.(2005). *The Working Poor: Invisible in America*. USA:Vintage Books
- Waddell, F.E.. 김경자 등 옮김(1999). 고객관리를 위한 재무상담. 서울:시그마프레스
- Xiao, JJ. & Newman B.M. & Prochaska J.M. & Leon B. & Bassett R.L. & Johnson J. L. (2004). Applying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to Consumer Debt Behavi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5(2), 89-100.

2011-11-25

금융소비자학회2011

19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3주제: 보험소비자 가용정보현황과 금융교육의 과제

발표: 지범하 (한동대)

이경주 (홍익대)

최현자 (서울대)

보험소비자 가용정보 현황과 과제¹⁾

지범하(한동대), 이경주(홍익대), 최현자(서울대)

I. 서론

-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와 교섭력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금융상품은 일반상품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거래의 결과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둘째, 거래의 대상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셋째, 계약 이행여부가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 따라서 다른 어떤 상품에 비해서도 정보 비대칭성과 교섭력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입 이전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여 설령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그리고 상품의 효과를 단기간에 알기 어려워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비용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알 수 있으며, 그 비용도 상당히 큰 경우가 적지 않음. 또한 관련 정보의 이해나 활용도 측면에서도 금융회사보다 열위에 있음.
- 특히 보험시장에서 제공되는 보험 상품과 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인 무형성(intangibility), 비분리성(inseparability), 이질성(heterogeneity), 소멸성(perishability)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금융서비스가 가지는 특성인 복잡성(complexity)과 장기성(longevity)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또한 생산원가가 상품 판매 후 미래의 보험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독특함으로 인해 적정 가격의 산출, 지급능력의 확보 및 유지, 적절한 보상 등과 관련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및 교섭력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크게 노출되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초래하는 불완전 판매 문제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보험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임.
- 금융법제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조력하기 위해서 금융상품 정보와 금융회사 경영정보를 공시 내지는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보험업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포털,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 개별 보험사업자의 상품공시 등을 통해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조건 및 가격이 어떤지 등을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정보 및 교섭력 열위에 있는 보

1) 본 보고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다.

험소비자 관점에서 용이하게 활용하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개선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문제를 최소화하고 보험소비자의 선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가용 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II. 보험시장에서의 보험 상품 가용정보 현황

1. 보험 상품 가용정보 현황

- 보험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정보는 보험사의 상품 관련 공시정보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정보,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경영정보 및 민원·제재·소송 정보 등이 있음. 이들 정보는 일반에게 공표되고 있는 상태라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 가운데 보험사 공시정보는 대부분 보험협회 비교공시정보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험협회 비교공시 사이트가 각 보험사 상품공시실에 연계되어 있어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 보험 상품 공시 관련 현행법규의 주요 내용

1) 상품 공시

가.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²⁾

-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명칭
- 보험 가입에 따른 주요 권리·의무
- 보험약관 상의 보장내용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해약환급금
- 예금자보호 관련 사항 등
-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손실발생가능성과 손실의 보험계약자 귀속사실 및 최저 보장 보험금
- 금리연동 보험 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보험안내 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 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나. 보험 상품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재내용³⁾

-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 등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계약, 자산연계형 보험계약의 경우
 -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
-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⁴⁾

-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 내용
- 자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기타,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보험업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2) 상품 비교공시

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실적의 비교·공시⁵⁾

-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음.

나. 보험 상품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내용⁶⁾

3)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 및 관련시행세칙 5-11, 생명보험 상품통일 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 손해보험 상품 공시기준, 손해보험 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

4) 보험업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5) 보험업법 제108조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6) 보험업법 제124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보험감독규정 제7-46조 제1항, 생명보험 상품 비교공시 기준, 생명보험 상품 비교공시정보 작성지침, 손해보험 상품 비교공시 세부기준, 손해보험 상품

-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 금리연동형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 등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계약, 자산연계형 보험계약의 경우
 -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
-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방카슈랑스 관련 공시

가. 공시⁷⁾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보험회사의 명칭
 - 모집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 보험 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나. 비교공시⁸⁾

-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공시

<보험 상품 공시제도 변천내역>

- '01.1월 : 공시방법 개편
 - 정기공시, 개별공시를 폐지하고 판매상품의 목록 및 약관 등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도록 개선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 7)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8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4-16조 제2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4-16조 제3항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 공시기준

- 공시체계를 계약체결 전(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과 계약체결 후 (보험계약관리내용)로 나누어 운영
- 상품요약서에 보장급부별 보험료 예시표를 공시하고 연금보험에 대해 계약자 배당 예시 허용

□ '02.1월 : 사업비 지수 공시 추가

- 기 공시중인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외에 사업비지수방식의 사업비 추가 공시

※ (사업비지수) 상품별 예정사업비를 상품군별 업계평균 예정사업비와 비교한 사업비지수(index)를 산출하여 사업비 비목별로 공시

$$\text{사업비지수} = \frac{\text{개별 상품별 예정사업비율}}{\text{상품군별* 업계평균 예정사업비율}} \times 100$$

* 상품군 분류 : 보장성 I(종신보험), 보장성 II(순수보장형), 보장성 III(기타), 연금보험, 저축성 I(금리확정형), 저축성 II(금리연동형) 등으로 그룹

□ '02.12월 : 보험가격산출시스템(가격공시실) 구축

- 소비자가 해당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모든 판매형태의 상품별 보험료를 직접 산출·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03.11월 : 보험 상품 비교·공시 실시 (협회)

- 생·손보협회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교공시 제도를 운영
-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상품별 보장내용 및 보험료 비교

□ '06.4월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특별계정 투입금액 공시

□ '06.11월 : 상품설명서 제도 도입('07.4월 시행)

□ '07.4월 : 변액연금보험의 특별계정 투입금액 공시

□ '09.4월 :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확대 시행

□ '10.4월 : 현금흐름방식 도입에 따른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 공시 강화

자료원: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자료, “보험 상품의 사업비 등 공시 강화”, 2010. 8.31.

(2) 보험업협회 비교공시 현황⁹⁾

1)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관련 기준 및 지침 내용¹⁰⁾

가. 공시대상: 상품(단체보험 및 특정 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상품 제외) 및 불완전판매비율

9) 홈페이지별 정보공시 및 이용 예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10)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기준(2011.4.7.개정 / 2011.6.1.부터 시행),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작성지침

나. 비교공시 내용 및 방법

A. 일반

-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보험종류별·회사별로 다음의 내용을 비교·공시
 - 상품명
 - 지급조건 및 보장내용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 공시이율(단, 금리연동형의 경우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 그 밖에 해당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특이사항
- 불완전판매비율: 판매채널별·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

B. 추가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 연금저축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 및 자산연계형 보험계약
 -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직전 3년간 공시이율(금리연동형보험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 퇴직연금계약의 경우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의 경우 공제금액 내역
- 저축성보험의 경우 모집수수료율
- 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보험료지수
 -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2) 손해보험협회 비교공시 관련 기준 및 지침 내용¹¹⁾

가. 공시대상: 상품(단체보험 및 특정 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상품 제외) 및 불완전판매비율

나. 비교공시 내용 및 방법

11) 손해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 세부기준, 손해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자료작성지침

A. 일반

-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보험종류별·회사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을 비교·공시
 - 상품명
 - 지급조건 및 보장내용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 공시이율(단, 금리연동형(자산연계형 보험 포함)의 경우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 그 밖에 해당상품가입 시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특이사항
- 불완전판매비율: 판매채널별·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

B. 추가

-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의 경우
 -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 및 자산연계형 보험계약
 -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직전 3년간 공시이율(금리연동형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의 경우 공제금액 내역
- 저축성보험의 경우 모집수수료율
- 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보험료지수
 -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3) 보험사업자 비교공시 현황

- 상품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 증권, 저축은행)별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 공시¹²⁾

2. 보험 상품 가용정보 활용방법 예

- 여기에서는 보험소비자가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사례와, 보험회사 상품공시정보 및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정보를 활용하는 사례

12)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를 각각 예시함으로써, 일반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정보공시시스템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1) 맞춤형 보험 상품 선택 예시

- 보험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보험소비자가 보험 및 보험 상품 관련 지식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 즉 연령, 소득, 가족 구성, 재산, 이미 가입한 보험 상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임.
- 그러나 보험 상품의 특성상 일반 보험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그런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음. 아래의 예는 일간지 경제면의 재테크 상담사례로서, 전문가가 보험소비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합한 상품의 선택 및 가입범위 등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내용임.¹³⁾
- 경기도 일산에 사는 30대 초반의 김 씨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으로 아직 아이가 없고 월 소득은 회사원인 남편의 월급 280만원, 본인의 부업소득 50만원에서 100만원임. 보험은 현재 김 씨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에만 가입해 있는 상태임.
- 김 씨에 대한 전문가적 조언은, 첫째, 소득 대비 연금 불입 비중이 다소 높고, 둘째, 상품 선택이 잘못 됐으며, 셋째, 두어 가지 중요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그 이유는, 김 씨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절세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데, 김 씨는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반면,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되어있고 또 중도 해지의 경우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옳으며, 지금이라도 비과세 변액연금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 보기 드물게 보장성보험에 한 건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보험 두어 가지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우선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는데,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 1000만원을 특약으로 반드시 선택할 필요가 있음. 이때 들어가는 보험료는 부부 모두 15년 납입 조건으로 할 때 남편 8만5000원, 부인 7만 원 정도로서 부담이 크지 않음. 남편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남편의 유고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주계약을 최소 5000만원으로 하되, 암, 수술, 입원, 질병 등의 특약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가 있음.

(2) 상품공시정보 활용법 예시

13) 중앙일보, “부인의 소득공제 연금보험, 비과세 변액으로 갈아타라”, 2011.11.18.에서 요약 발췌.

-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정비한 「금융상품 통일공시기준」(2011. 2.14.)은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1년 4월 1일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그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면서, 금융업권별 공시이용매뉴얼 중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금융상품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을 발표한 바 있음.¹⁴⁾ 금융감독원에서는 그와 같은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을 제시하면서, 공시정보의 활용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나아가 금융 분쟁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금융상품 공시정보 활용법」의 5단계는, (1)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 상품 확인, (2)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회사별로 비교, 선택, (3) 선택한 상품의 납부액 및 만기금액 등의 사전 계산, (4) 선택한 상품의 모든 정보 꼼꼼하게 확인, (5) 금융상품모집인의 자격여부 확인 후 거래 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¹⁵⁾
-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금융상품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을 보험 상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보험 상품 가입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살펴보고, 이미 가입해 있는 보험 상품 내역을 확인함. 이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포털(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조회' 등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 다음에는 보험 상품 비교공시를 통해 회사별, 상품별로 금리, 수수료 등의 계량적 정보를 비교, 확인함. 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내 금융상품비교 혹은 각 협회의 상품비교공시 등에서 파악 가능함.
- 위의 두 단계를 거쳐 보험 상품을 선택한 후에는 선택한 상품의 예상이율·기간, 보험료·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해 납부금액과 만기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설계해볼 수 있음. 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의 금융계산기, 해당 보험사의 보험가입설계(가격공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선택한 보험 상품 가입 시에는 이율, 수수료 등 계량정보뿐 아니라 이율결정방법, 중도해지 조건, 보상하는 손해 등 각종 비계량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 및 건전성(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내 경영공시)과 예금자보호여부 등도 고려해야 함. 상품 관련 세부내용은 각 금융회사의 상품공시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확인할 정보는 보험모집인의 자격 여부임. 자격 없는 모집인과 거래하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은 동시에 이후 지속적인 관리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

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알면 힘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 5단계로 확인하세요.", 2011. 3.28. 참조

15) 이와 같은 「금융상품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은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 상품공시실 시작화면에 공시이용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관련 사이트들이 연계되어 있음.

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중개인 조회, 각 협회의 보험대리점 조회 등을 활용해 보험 상품 모집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함.

<보험회사 상품공시실 시작화면의 상품공시매뉴얼>

공시이용 매뉴얼

▶ 홈 > 공시실 > 상품공시실 > 공시 매뉴얼

❶ 금융상품공시란?

-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모든 상품정보와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하여 상품내용을 확 확인하여야 합니다.

❷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 선택하기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마당/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❸ 보험가입내역 확인으로 충복가입 피하기

-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조회/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생명보험협회 카드설비보험조회/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❹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하기

-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http://pub.misori.or.kr>)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❺ 보험가입공시실에서 보험 설명하기

-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적용/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❻ 자격있는 보험상품 모집인과 거래하기

- 두가지 모집인과 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구제도 조건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 보험전문민족회
- 증권사 : 금융감독원 보험전문민족회
- 주수인증설계사 : 생명보험협회 민족설계사조회(<http://eisar.vssue.or.kr:8501/bsb/klia/misr/index.htm>)

❼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 제공받기

- 금융상품계약 체결 시 단계별로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그 내용을 알맞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관계 시 : 가입설계서
- 보험계약 청약 전 : 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청약 후 : 보험계약판이내용

❽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서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이용하기

❾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자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청약서에 자동식별 또는 날인(도장을 채움)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서로부터 그에 따른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점)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❾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간화, 우편, 컴퓨터, 텔미, 풀신마케팅을 통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단계약, 단체(회원)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❾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험공사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공기가 마련되어 진으로,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을 기준으로 1인당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금을 보장합니다. 기업이라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❽ 보험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 신청하기

- 보험회사 민원센터 ☎ 1577-1004 / 보험피해 민원접수(www.misr.or.kr)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마당 ☎ 02-2522-4555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마당(www.klia.or.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1332 / e-금융민원센터(www.fc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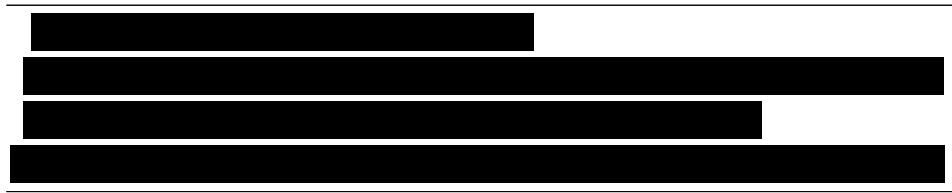
(3) 비교공시정보 활용방법 예시: 보험가격 비교 사례

- 비교공시정보는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한 가지인 보험료를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비교하는 방법을 금융감독원에서 다음과 같이 예시한 바 있음.¹⁶⁾ 물론 예시 중간 중간 나오는 설명은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삽입한 것으로서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정보는 아님.

1) 보험료 공시자료 활용방법

- 보험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도록 되어있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보험료 공시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상품요약서는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보험가입 전에도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회사별, 상품별 상품요약서를 조회하여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음.



2)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비교방법

- 공시기준: 저축성보험의 가입설계서는 개별 계약자 기준으로, 상품요약서는 대표계약 기준(가입조건 예시: 40세, 보험료 20만원 보험기간 20년 등)으로 보험료 공시자료가 제시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개별 계약자별 보험료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설계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시정보: 보험료가 적립·부리되기 전에 공제되는 비용, 해지공제액 및 특별계정운용수수료 등 모든 유형의 비용과 수수료(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 특별계정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중도인출수수료, 기타서비스 제공 관련 수수료, 해약공제액 등 포함).

가. 보험료 비교방법

-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과 다르게 일정액의 보험료가 납입되면 필요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적립금에 추가되며, 수수료 공제가 작을수록 적립금이 커져 계약자에게 유리함.

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료 공시자료 활용방법”(2010.10.22.)에서 일부 수정, 현재 분량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공시자료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적시하기 위해 내용 대부분을 거의 그대로 옮김.

-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수수료에는 계약관련비용 외에 보험 상품의 특성 상 사망 등 위험보장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비교대상)

-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

※ 적립금 = $\sum(\text{납입보험료} - \text{사업비} - \text{위험보험료}) \times \text{이자부리}$

- 적립된 금액이 부리되는 과정에서는 적립 후 부리이율(예: 공시이율, 특별계정이익률 등)과 운용보수수수료가 영향을 미치므로 이것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비교대상)

- 특별계정운용에 대한 보수.수수료
- 공시이율, 특별계정이익률, 지수연계 이자율 등

※ 적용이율 조회방법: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 상품공시실 → 연금저축/변액보험/자산연계형 공시실

- 이밖에 계약 유지 중에 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약, 중도인출, 보험료 추가납입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 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주요비교대상)

- 해약공제액
- 중도인출수수료
- 추가납입 관계비용 등 기타서비스 제공 관련 수수료

나.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비교 사례

- 보험소비자는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수수료(보험계약 체결비용 및 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해지공제비용, 추가 비용.수수료) 안내표를 상품요약서와 가입설계서에서 조회가 가능함.

※ 상품요약서 조회방법: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 상품공시실(주로 하단) → 상품목록

※ 가입설계서(모집인이 보험 권유 시 해당 계약자에게 맞게 상품을 설계.제공하는 자료)에는 개별계약(계약자의 가입조건)의 수수료 안내표가 공시되어 있음.

- 보험협회의 인터넷사이트에서도 모든 보험회사의 수수료 안내표를 포함한 상품요약서를 조

회할 수 있으며 가입조건에 따른 가격 비교도 가능함.

※ 상품요약서의 비교공시 조회방법:

보험협회 홈페이지 → 공시실 → 상품비교 → 항목별 비교

보험료 공시(수수료 안내표) 조회 예시

가.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남자 40세, 월납기본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미만 : 기본보험료의 6.17% (12,34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0년미만 : 기본보험료의 6.5% (11,000원) 10년이후 : 기본보험료의 0.1% (2,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3995% ~ 2.208% (799원 ~ 4,416원)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나.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109만원	91만원	73만원	54만원	36만원	18만원	0
해지공제 비율	45.4%	18.9%	10.1%	5.7%	3.0%	1.3%	0.0%

주 1)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주 2) 해지공제비율 = $\frac{\text{해지공제금액}}{\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다.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 관계비용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2.5%
중도인출 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에서 부과가능 · 현재는 인출금액의 0.1%(2,000원 한도)를 부과하고 있음
웰빙자금 관계비용	계약유지·관리비용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종 웰빙자금 수령시까지 매월	· 매월 연금개시시점 웰빙자금의 0.005%

수수료 안내표 활용 시 유의사항

- 보험소비자는 수수료 안내표의 다음 3가지 내용은 모두 고려해야 함.

①계약 체결·관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

②해지공제액

③추가 비용, 수수료(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 시 비용 등)

• 해지공제액, 추가 비용, 수수료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추가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 않음.

► 보험계약을 유지 시에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위험보험료”의 수준이 중요

다. 보험료 공시(수수료 안내표)를 활용한 가격 비교 예시: 저축성 연금보험 사례

- 비교 검토 과정

① 1단계: 가입 시 비용, 수수료 검토

A사의 수수료안내표

가.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남자 40세, 월납기본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미만 : 기본보험료의 6.17% (12,34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0년미만 : 기본보험료의 6.5%(11,000원) 10년이후 : 기본보험료의 0.1% (2,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3995% ~ 2.208% (799원 ~ 4,416원)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B사의 수수료안내표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40세(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 20만원, 전기납)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 미만: 기본보험료의 5.97%(11,94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20년 미만 : 기본보험료의 6.0% (12,000원) 20년 이후: 기본보험료의 0.0% (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1090%~0.6175% (218원~1,235원)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 가입조건은 동일(남자 40세, 보험료 월20만원, 60세 연금개시 등)
- A사는 계약체결/관리비용으로 10년 동안 매월 보험료의 11.6%(23,840원), 10년 이후는 0.1%(2,000원)를 부과
- B사는 계약체결비용으로 10년 동안 매월 보험료의 5.9%(11,940원), 20년 동안 계약관리비용으로 매월 보험료의 6.0%(12,000원) 부과
- A사, B사 모두 연금수령기간동안 비용(연금액의 0.5%)은 동일
- 위험보험료는 A사가 B사보다 높으나, A사의 사망보험금이 600만원으로 B사(200만원)의 3배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A사, B사의 위험보험료는 비슷함

< A사 및 B사의 수수료 구조 비교 >

구 분	계약체결·관리 비용		연금수령비용 (연금수령시)	위험보험료 (매월)
	~ 10년 (매월)	10 ~ 20년 (매월)		
A사	23,340원	2,000원	연금액의 0.5%	(799원 ~ 4,416원)
B사	23,940원	12,000원	연금액의 0.5%	(218원 ~ 1,235원)

→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계약체결/관리 비용을 비교하면, A사의 수수료가 B사보다 작으므로 A사 상품이 유리

② 2단계: 적립이율 검토

- A사의 공시이율(4.8%)이 B사(4.7%)보다 0.1%P 높으므로 가입시점 기준으로는 A사 상품이 계약자에게 유리[다만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적용주기(월, 분기 등)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적용이율 조회방법 :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 상품공시실

A사의 적립이율

■ (무)신공시이율Ⅳ(연금)

적용월	적용이율	적용상품
2010.10	4.8 %	판매중 : (무)여자예찬연금보험, (무)리치바로연금보험, (무)바로연금보험, (무)골드에이 지리치연금보험, (무)연금보험Enterprise, (무)리치플러스연금보험
2010.09	4.8 %	판매중지 : (무)마스터플랜연금보험, (무)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

① 산출방법 : 회사의 운용자산미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반영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미률을 곱하여 매월 산출

B사의 적립이율

기간	공시이율(2009.10.01 이전계약 / 2009.10.01 이후계약)
2010-10-01 ~ 2010-10-31	4.70%/4.70%
2010-09-01 ~ 2010-09-30	4.60%/4.60%
2010-08-01 ~ 2010-08-31	4.80%/4.80%

③ 3단계: 기타 수수료 검토

- 해지공제금액과 해지공제비율은 B사가 A사가 더 낮아, 해지하는 경우 B사 상품이 계약자에게 유리

< A사의 해지공제금액 및 비율>

나.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109만원	91만원	73만원	64만원	36만원	18만원	0
해지공제비율	45.4%	18.9%	10.1%	6.7%	3.0%	1.3%	0.0%

< B사의 해지공제금액 및 비율 >

※ 해지공제 비용

(단위 : 원)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1,028,571	857,143	685,714	514,286	342,857	171,429	0	0
해지공제비율	42.9%	17.9%	9.5%	5.4%	2.9%	1.2%	0.0%	0.0%

- 보험료 추가 납입 시 A사 비용(보험료의 2.5%)은 B사 비용(보험료의 3%)보다 낮으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고, 중도인출 수수료는 A사, B사 모두 동일

< A사의 추가비용 및 수수료 >

다.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 관계비용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2.5%
중도인출 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에서 부과가능 - 현재는 인출금액의 0.1%(2,000 원 한도)를 부과하고 있음
웰빙자금 관계비용	계약유지·관리비용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종 웰빙자금 수령시까지 매월	- 매월 연금개시시점 웰빙자금의 0.005%

< B사의 추가비용 및 수수료 >

2)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④ 비교 검토 결과

- 계약이 장기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A사 상품의 수수료가 더 작으므로 A사의 상품이 계약자에게 유리함
- 다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는 해지공제액은 B사가 더 작다는 점을 고려

3) 보장성보험 및 금리획정형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비교방법

- 공시기준: 보장성 보험 등은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대표계약 기준으로 보험료 자료가 제공됨.
- 공시정보: 보험료의 전반적 수준을 제공하는 '보험료지수'와 위험을 1년 동안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인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다양한 보장위험들로 조합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장위험별로 세분화한 연간보험료)를 공시함.

가. 보험료 비교방법

- 보장성보험은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미리 정해져 있어, 동일한 위험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 또는 '보험료지수'만으로 가격 비교가 충분하며 보험료지수가 높을수록 보험료 수준이 높음
- 상품별 위험보장들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또는 "보험료지수"와 함께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를 가격비교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지수'는 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료가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고,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는 주계약 내의 해당 담보 또는 해당 담보특약의 보험료가 높은지, 낮은지를 나타냄

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비교 사례

① 보험료 공시(보험료 지수,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조회 방법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활용하여 보험료 수준을 이해·비교할 수 있음

- 상품요약서와 가입설계서에 대표계약자(남자 40세 등)의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공시
- 또한 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동 지수들을 보험회사별로 손쉽게 비교할 수 있음

< 보험료 지수 및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의 공시 예시 >

(기준 : 본인 남자40세, 자녀 남자5세)

구 분	보험료 지수 (%)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만원)
	본인	자녀			
(무)스마트유니버설통합종신보험	표준체	133.5	종신	20년납	10,000
	건강체	135.6			
(무)CI추가보장특약(K1.1)(갱신형)	200.0	-	3년 갱신	3년납	1,000
(무)CI보장특약(K1.1)(갱신형)	155.6	-	3년 갱신	3년납	1,000
(무)CI5대질병보장특약(K4.1)	124.8	-	80세만기	20년납	1,000

(기준: 본인 남자 40세, 자녀 남자 5세)

구분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장 위험		연간보험료(원)	기준보험금 (만원)
				본인	자녀		
주 계 약	(무)스마트유니버설통합종신보험	종신	20년납	표준체	사망	167,624	-
				건강체		149,163	-
	(무)CI추가보장특약(K1.1)(갱신형)	3년갱신	3년납	소액암진단		428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601	-
				관상동맥성형술		844	-
				양성뇌종양수술		138	-
							100
							1,000
							100
							1,000
							100
							100

② 보험료 공시를 활용한 가격 비교

< 사례 I : 위험보장 내용이 동일한 경우 : 종신보험 >

보험료 공시자료

- A사의 보험료지수

(기준 : 남자40세)

구 분	보험료지수(%)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만원)
(무) 종신보험	표준체	139.7	종신	20년납	10,000
	건강체	122.5			

- B사의 보험료지수

구분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지수	가입금액(만원)
주계약	(무)종신보험	종신	20	132.5%	10,000

검토 및 판단

- 가입조건이 동일함(보장성보험의 상품요약서의 대표계약: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20년납, 남자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 원)
- B사의 종신보험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표준체를 전제로 산출한 것임
- A사 보험료지수는 139.7%이고 B사 보험료지수는 132.5%로서 B사의 종신보험이 더 싸다고 판단됨

⇒ (결론) B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사례 Ⅱ : 주계약의 위험보장 중 일부가 다른 경우 : 암보험 >

보험료 공시자료

- A사의 보험료지수 및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

구분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연간보험료			보험료지수					
				보장위험	연간보험료 (원)		기준보험금 (만원)	보험료지수				
					남	여		남	여			
주 계 약	(부) 뉴 윈스톱 암보험	1형1종	80세	20년	암진단	1,340	1,081	10	150.4%	163.4%	1구좌	
					소액암*	45	176	10				
		1형2종	80세	20년	암진단	1,338	1,076	10	147.1%	156.8%		
					소액암*	45	175	10				
		2형	80세	20년	암진단	1,353	1,083	10	154.1%	165.6%		
					소액암*	46	176	10				
		3형	80세	20년	암진단	1,324	1,062	10	152.0%	168.0%		
					소액암*	45	173	10				

- B사의 보험료지수 및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

(기준: 남자, 40세, 월납)

구분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연간보험료			보험료지수	
				보장위험	연간보험료(원)	기준보험금(만원)	보험료지수	가입금액(만원)
주 보험	(무)자기사랑암보험 II 1종 순수보장형	80세	20년	사망	110,449	1,000	130.5%	1,000
				암진단	93,869	1,000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상피내암/갑상샘암 진단	311	100		
주 보험	(무)자기사랑암보험 II 2종 만기환급형	80세	20년	사망	82,224	1,000	126.1%	1,000
				암진단	139,671	1,000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상피내암/갑상샘암 진단	462	100		

검토 및 판단

- 가입조건이 동일(보험가입금액에서 A사는 10만원 기준이나 1000만원으로 환원 가능)

- 주계약 내에 위험보장의 종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암 진단 담보 기준으로 판단함
- 암 진단 담보를 포함한 주계약의 보험료지수는 A사 150.4%, B사(순수보장형) 130.5%로서 B사가 더 싸다고 판단됨. 다만 B사(순수보장형)는 사망 담보가 포함되어 있어 주계약의 보험료지수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 암 진단 담보의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로 비교해 보면, 1000만원 기준으로 A사 134,000원, B사 순수보장형 93,869원으로 B사가 싸다고 판단됨

⇒ (결론) 전체적으로 B사 암보험(순수보장형)이 더 싸다고 판단되나, B사 암보험에는 사망 담보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암보장만 필요한 경우 A사 암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III. 보험소비자의 보험구매의사결정에서의 정보활용

보험소비자가 가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더라도 소비자의 정보탐색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유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 본 절에서는 보험 소비자조사¹⁷⁾를 통해 보험구매자들의 구매행태와 정보탐색행동 그리고 이들의 역량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생명보험 구매의사결정

1) 보험 가입 전 확인사항 준수 현황

- 보험구매시 보험구매자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여부를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보험소비자의 13.9%만이 모든 단계를 확인하고 보험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장성보험 구매자의 확인율이 낮으며 통합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 구매자의 0.1%만이 전부 단계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3-1 > 가입보험상품별 가입단계 체크포인트 활용율

(단위:%)

	준비해야 할 위험과 상품의 보장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납입할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적절한지 다른 보험과 비교 여부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 확인	사업비 비교	예정이율 확인	모든 단계확인
보장성보험	81.5	73.2	90.6	18.3	33.6	13.2
1) 종신보험	82.5	71.9	86.0	36.8	59.6	28.1
2) 정기보험	80.0	60.0	40.0	40.0	40.0	-
3) 질병보험	91.9	75.6	94.2	23.3	37.2	16.3
4) 통합보험	79.7	65.6	89.1	10.9	37.5	0.1
5) 상해보험	73.4	68.8	89.1	21.9	32.8	17.2
6) 어린이보험	82.6	82.6	91.3	17.4	29.0	14.5
7) 실손의료비보험	78.5	73.5	91.7	11.6	24.3	0.1
8) 기타 보장성보험	89.5	73.7	100.0	15.8	31.6	10.5
저축성보험	73.2	66.3	93.2	24.9	71.2	18.5
1) 연금저축	80.3	72.7	90.9	30.3	69.7	21.2
2) 일반 및 변액연금	64.0	76.0	100.0	32.0	60.0	24.0
3) (변액)유니버설 보험	75.0	55.6	91.7	33.3	72.2	25.0
4) 저축보험	69.2	62.8	93.6	14.1	75.6	11.5
전체	78.1	68.6	90.9	19.4	42.2	13.9

17) 본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광역시 거주자 중 자신 또는 가족을 대신해 직접 생명보험 가입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본추출방법은 행정안전부 2011년 동읍면 5세별 주민등록인구표를 근거로 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에 따라 할당추출법으로 추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생명보험유형별 구매의사결정과 보험이해도를 포함하고 있음. 이하 내용은 본 조사결과에 근거함.

- 준비해야할 위험과 상품의 보장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보험소비자는 전체의 78.1%임.
- 저축성 보험에 비해 보장성보험 소비자가 더 많이 확인하고 있음. 저축성보험 중 특히 일반/변액연금 및 저축보험소비자의 확인율이 낮음.
- 준비해야할 위험과 상품의 보장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3/4을 상회하나 준비해야할 위험에 적합한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8%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 참조**).
- 즉, 여전히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이 준비해야하는 보험에 적합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채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납입할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를 하고 보험을 구매한 보험소비자는 전체의 68.6%임.
-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저축보험 소비자의 확인율이 낮아 보장성보험에 비해 전체적으로 저축성보험 소비자의 확인율이 낮음.
- 전체의 90.9%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확인하고 있음
- 보험상품을 구매할 때 사업비를 비교하는 비율은 전체의 19.4%에 지나지 않았으며
- 절반이상의 보험소비자들이 예정이율을 확인하고 있지 않음. 예정이율이 중요한 비교지표인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전체의 1/4이상의 보험구매자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보험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

가) 보험회사 및 상품에 대한 정보원천

-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내자료에 의존하고 있음.

<표3-2> 보험회사 및 상품에 대한 정보원천 (단위:%)

정보원천	2006*	2009*	2011
설계사(대리점, 중개사 포함)	89.4	92.3	62.8
보험사 홈페이지	4.7	3.9	4.3
생보협회 홈페이지(공시정보 등)	3.6	1.2	1.0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창구	4.7	6.2	5.0
TV, 신문 등 언론매체	21.7	16.0	4.3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의 우편안내자료	9.1	6.8	19.4**
포털 등 인터넷 검색	2.7	1.4	-

기타	0.8	0.8	0.9
----	-----	-----	-----

* 생명보험협회(2010), 생명보험성향조사 결과 (복수응답, 2000, 2003년 항목없음)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상품안내장 등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내자료

나) 생명보험 상품별 주 정보원천

- 생명보험 상품별로 보험회사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조사한 결과 보장성 보험상품 가입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설명이나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상품안내장 등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로 부터 얻고 있으며

-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이어 방카슈랑스의 영향으로 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3 > 가장 최근 가입 보험상품별 주 정보원천

(단위: %)

	가입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보장성보험	54.5	63.3	22.2	4.6	0.7	1.8	0.2	4.4	0.9	1.8
1) 종신보험	5.7	70.2	21.1	7.0	0.0	1.8	0.0	0.0	0.0	0.0
2) 정기보험	0.5	60.0	20.0	20.0	0.0	0.0	0.0	0.0	0.0	0.0
3) 질병보험	8.6	64.0	23.3	5.8	0.0	2.3	0.0	4.7	0.0	0.0
4) 통합보험	6.4	71.9	17.2	1.6	1.6	1.6	0.0	4.7	0.0	1.6
5) 상해보험	6.4	56.3	25.0	3.1	0.0	1.6	1.6	4.7	1.6	6.3
6) 어린이보험	6.9	53.6	24.6	7.2	4.3	2.9	0.0	2.9	2.9	1.4
7) 실손의료비보험	18.1	66.3	22.1	2.2	0.0	1.1	0.0	5.0	1.1	2.2
8) 기타 보장성보험	1.9	42.1	21.1	15.8	0.0	5.3	0.0	15.8	0.0	0.0
저축성보험	20.5	64.4	13.2	2.4	1.0	14.1 ^②	0.5	3.4	0.0	1.0
1) 연금저축	6.6	54.5	18.2 ^②	3.0	1.5	18.2 ^②	1.5	3.0	0.0	0.0
2) 일반 및 변액연금	2.5	80.0	8.0 ^②	4.0	0.0	8.0 ^②	0.0	0.0	0.0	0.0
3) (변액)유니버설 보험	3.6	77.8	8.3	0.0	2.8	2.8	0.0	5.6	0.0	2.8
4) 저축보험	7.8	61.5	12.8	2.6	0.0	17.9 ^②	0.0	3.8	0.0	1.3
잘 모르겠다	25.0	60.4	18.4	5.2	1.6	4.4	0.4	4.8	0.4	4.4
전체	100.0	62.8	19.4 ^②	4.3	1.0	5.0	0.3	4.3	0.6	2.3

①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설명 ②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상품안내장 등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내자료 ③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정보) ④ 생명보험 협회 홈페이지 (비교공시정보) ⑤ 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 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비교공시정보) ⑦ TV, 신문 등 언론매체의 프로그램이나 기사 ⑧ 각종 광고 ⑨ 특별히 정보를 제공받거나 찾아보지 않음 ⑩ 기타

- 보험회사의 상품공시정보나 비교적 중립적인 정보원천인 생명보험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정보를 통해 보험가입정보를 획득하는 보험소비자는 극히 소수임.

- 즉, 생명보험상품소비자의 경우 상업적 정보원천에 대한 의존성이 크며 비교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원인은 생명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경로에서 찾아 볼 수 있음.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또는 보험사직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

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3-4> 보험상품별 가입시 주로 이용한 가입경로 (단위:%)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보험사 임직원	대형법 인대리 점(GA)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 /카드사)	TV 쇼핑채널 (홈쇼핑)	인터넷	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	기타
보장성보험								
1) 종신보험	73.9	13.7	1.5	3.1	1.6	2.0	2.2	2.0
2) 정기보험	61.2	17.6	1.8	6.6	1.8	5.3	4.0	1.8
3) 질병보험	61.7	15.2	1.7	7.9	4.2	4.9	2.7	1.7
4) 통합보험	64.9	14.9	1.5	5.4	3.8	5.0	3.2	1.5
5) 상해보험	60.3	13.7	1.7	8.8	5.6	5.5	3.6	0.8
6) 어린이 보험	58.6	8.7	2.6	7.3	6.7	11.1	4.7	0.3
7) 실손의료비 보험	58.9	11.4	2.4	8.1	8.3	6.5	3.7	0.8
8) 기타 보장성 보험	57.3	11.3	3.0	8.5	5.8	9.4	3.9	0.8
저축성보험								
1) 연금저축	51.3	12.7	2.2	6.5	5.1	2.5	18.5	1.1
2)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64.4	10.6	1.1	3.7	3.7	2.7	12.2	1.6
3) (변액)유니버설 보험	68.1	13.8	1.3	4.4	2.5	1.9	5.6	2.5
4) 저축보험	47.8	8.8	1.5	15.7	3.3	4.7	17.5	0.7

다. 보험상품 정보원천에 대한 평가

- 한편 활용한 정보의 질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해의 용이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의 적절성과 정확성이 다음으로 떨어짐.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표3-5> 최근 보험상품 가입시 활용한 주 정보원천별 정보평가

(단위:점, 5점 만점)

	유용성	충분성	이해용 이성	정확성	신뢰성	최신성	적절성	전반적 만족도
①	3.62 ^②	3.52	3.42	3.45	3.55 ^②	3.49	3.40	3.42
②	3.58 ^③	3.47	3.11	3.32	3.38	3.41	3.32	3.34
③	3.33	3.33	3.14	3.21	3.37	3.37	3.35	3.33
④	3.40	3.70 ^①	3.60 ^①	3.50 ^②	3.40	3.40	3.70 ^①	3.70 ^①
⑤	3.78 ^①	3.68 ^②	3.60 ^①	3.54 ^①	3.74 ^①	3.62 ^②	3.40	3.56 ^③
⑥	3.33	3.67 ^③	3.00	3.00	3.00	3.33	3.33	3.67 ^②
⑦	3.40	3.14	3.30	3.00	3.16	3.26	3.05	3.19
⑧	3.50	3.00	3.50 ^③	3.00	3.33	3.67 ^①	3.33	3.00
전체	3.60	3.49	3.35	3.39	3.50	3.47	3.37	3.41

①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설명 ②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상품안내장 등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내자료 ③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정보) ④ 생명보험 협회 홈페이지 (비교공시정보) ⑤ 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 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비교공시정보) ⑦ TV, 신문 등 언론매체의 프로그램이나 기사 ⑧ 각종 광고 ⑨ 특별히 정보를 제공받거나 찾아보지 않음 ⑩ 기타

-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용성, 이해용이성, 정확성,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정보원은 금융기관의 창구이며,
- 정보의 충분성과 적절성 그리고 이해용이성 측면에서는 생명보험협회의 비교공시자료가 높은 평가를 받음.
- 한편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정보원은 보험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설명이나 금융기관 창구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험소비자는 면대면 정보원천에 더 큰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보원은 생명보험 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비교공시정보이나 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보험소비자는 극히 소수임(1.3%).

라. 보험상품 관련 정보탐색 시 비교지표의 활용

-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을 구매할 때 다음의 비교지표를 활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와 공시이율을 활용한 보험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의 약 1/3을 넘는 수준으로 많은 경우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음.

<표3-6> 최근 보험 가입시 가입보험상품별 각 비교지표활용률 (단위:%)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료지수	보장위험별연간보험료	모집수수료율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	운용보수수수료	위험보험료	공시이율	특별계정이익률
보장성보험	23.5	15.0	10.6	5.7	23.5	37.4	7.9	20.2	11.0	16.0	27.9	12.1
1) 종신보험	38.6	14.0	17.5	5.3	29.8	38.6	10.5	31.6	22.8	24.6	54.4	22.8
2) 정기보험	60.0	40.0	40.0	20.0	0.0	40.0	20.0	20.0	20.0	60.0	40.0	40.0
3) 질병보험	24.4	20.9	9.3	5.8	24.4	33.7	8.1	19.8	10.5	15.1	25.6	10.5
4) 통합보험	28.1	20.3	9.4	9.4	25.0	40.6	6.3	17.2	9.4	17.2	23.4	12.5
5) 상해보험	28.1	20.3	12.5	9.4	20.3	43.8	4.7	25.0	14.1	18.8	23.4	14.1
6) 어린이보험	18.8	11.6	11.6	5.8	27.5	42.0	8.7	18.8	8.7	17.4	26.1	11.6
7) 실손의료비보험	16.6	9.9	7.7	2.8	21.0	33.7	7.7	16.6	7.7	10.5	24.9	8.8
8) 기타 보장성보험	15.8	10.5	10.5	5.3	21.1	36.8	10.5	21.1	10.5	15.8	21.1	5.3
저축성보험	52.2	22.4	16.1	5.9	28.8	36.1	9.3	23.9	19.0	20.0	58.5	16.1
1) 연금저축	53.0	27.3	9.1	7.6	31.8	39.4	7.6	30.3	18.2	21.2	60.6	18.2
2) 일반 및 변액연금	56.0	24.0	16.0	8.0	28.0	52.0	12.0	20.0	24.0	24.0	44.0	16.0
3) (변액)유니버셜 보험	47.2	25.0	30.6	2.8	25.0	19.4	5.6	22.2	22.2	19.4	50.0	16.7
4) 저축보험	52.6	16.7	15.4	5.1	28.2	35.9	11.5	20.5	16.7	17.9	65.4	14.1
전체	29.8	16.6	11.7	5.7	25.1	36.9	8.6	21.3	14.5	17.9	36.7	13.1

- 예정이율이나 보험료지수를 활용한 적이 있는 보험소비자는 1/4 정도이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활용한 보험소비자는 1/5정도 수준임.

-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운용보수수수료, 위험보험료, 특별계정이익률 등을 활용한 적이 있는 보험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 특히 불완전판매비율과 모집수수료율을 보험가입의사결정에 활용한 적이 있는 보험소비자는 1/10이 채 되지 않음.

- 전반적으로 이러한 비교지표들은 소비자들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보장성보험가입시에 비해 저축성보험 가입시 비교지표의 활용율이 높음

- 계약의 장기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보탐색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다른 금융상품 유통영역과 달리 대리인에의 역할의존성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됨

(2) 생명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

-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공시제도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보험이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함.

- 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 보험상품 비교공시정보, 보험계약 등에 대한 이해력을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에서 측정함.

1) 보험에 대한 기초지식

- 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으로 준비해야 할 위험에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험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함.

<표 3-7> 준비해야 할 위험에 적합한 상품에 대한 이해*

(단위: %)

보기	변액유니버설보험 또는 저축성보험	상해보험 또는 종합보험 등	암보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변액연금 또는 연금저축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 등
1.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의 생활 보장	16.3	12.6	11.8	7.1	52.2
2. 질병시의 의료비 보장	2.4	13.4	77.4	2.3	4.5
3. 재해, 교통사고시의 재산상 손해에 대비	6.2	67.7	7.2	4.3	14.6
4. 노후의 생활자금	19.0	3.1	2.2	62.5	13.2
5. 목돈마련 및 자산증식	56.1	3.2	1.4	23.8	15.5

* 정답자: 전체의 38%

-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38%만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 위험에 적합한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목돈마련이나 자산증식을 위해 변액연금이나 연금저축 또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답한 보험소비자가 거의 40%에 달함.
-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들은 자신의 위험에 대비해 적합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하는데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험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표3-8참조>) 100점 만점에 평균은 58점으로 보험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남.
- 피보험자와 보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보험소비자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 해지환급금과 보장성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보험소비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음.
- 보험소비자의 절반 정도는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료로 인지하고 있음.

<표3-8 > 보험용어에 대한 지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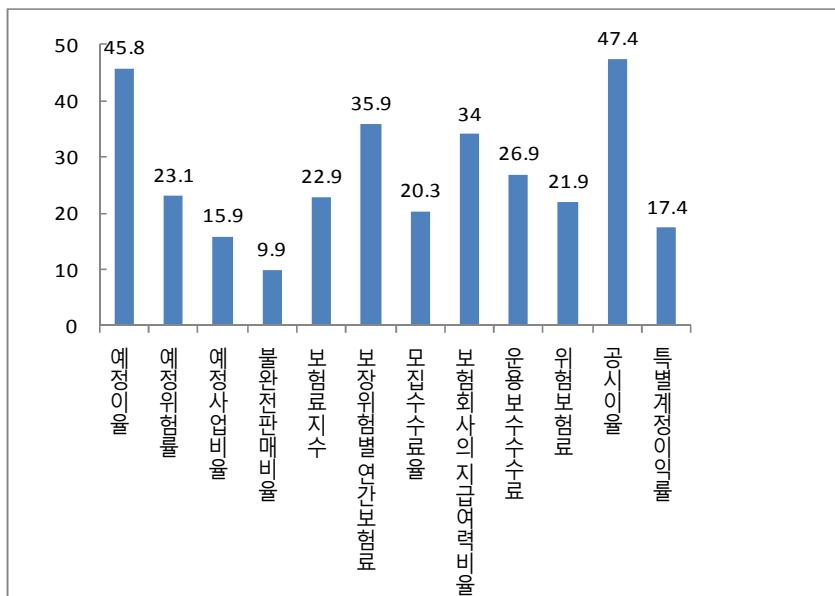
(단위: %)

설명	정답률
1. 보험약관이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O)	98.1
2. 특약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추가하는 보험 등을 말한다. (O)	93.0
3. 변액보험이란 보험금이 보험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이다. (O)	90.0
4.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한다. (O)	88.6
5. 보험기간이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한다. (x)	65.2
6. 영업보험료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순보험료이다. (X)	53.1
7.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 생존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X)	46.0
8. 해지환급금이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X)	42.5
9. 피보험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X)	32.7
10. 보험자란 보험사고의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X)	29.9

2) 보험상품 관련 정보탐색 시 비교지표의 이해

가) 비교지표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

- 한편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활용될 수 있는 비교지표들에 대한 이해여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절반 이상의 보험소비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 특히 보험료지수나 위험보험료, 모집수수료율 등 보험비용을 비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비교지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 보험소비자의 보험비교지표 이해여부 (단위 %)

나. 비교지표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보험상품 비교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과 주관적인 평가에 비해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지표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6점임.
-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비교지표들은 보험상품을 비교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어 상당히 많은 보험소비자들은 여전히 비교지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또 보험구매를 위한 정보탐색 시 이러한 비교지표를 활용하지도 않고 있음.

<표 3-9> 보험상품 비교지표 대한 지식 수준

(단위: %)

설명	정답률
11.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받는 보험금액이 높아진다. (O)	82.9
12. 특별계정이익률이 높을수록 미래에 받는 보험금액이 높아진다. (O)	77.1
7.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이다. (O)	76.5
2.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예정위험률이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O)	75.4
5. 일반적으로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해서 연간보험료가 낮다면 보험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O)	74.6
8. 불완전판매율이 낮을수록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 모집 질서를 잘 지킨 것이다. (O)	71.9
3. 일반적으로 예정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O)	71.1
10. 위험보험료가 높을수록 적립금이 낮아진다. (O)	67.4
1.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O)	60.9
9. 운용보수수수료가 높을수록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X)	56.7
6. 모집수수료율이 높을수록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용 부분이 낮아진다. (X)	55.5
4. 보험료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X)	53.9
평균 (표준편차) - 100점만점	66.0(22.7)

3)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

가. 보험계약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도

-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과연 계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보험소비자의 1/7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3-10> 보험 가입시 계약이해도

(단위: %)

	2000*	2003*	2006*	2009*	2011
충분히 이해 후 가입	29.9	18.3	25.9	14.4	14.2
대략 이해 후 가입	58.5	74.6	68.7	79.9	70.4
별로 이해안하고 가입	11.0	6.6	4.7	5.4	13.7
전혀 모르고 가입	0.5	0.5	0.7	0.2	1.7

* 생명보험협회(2010), 생명보험성향조사 결과.

- 가입한 보험상품별로 이해도를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소비자의 보험계약이해도가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이해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에 따라 계약내용에 대한 별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표3-11> 최근 가입 보험상품별 계약이해도

(단위: %, 점)

	전혀 모르고 가입(1점)	별로 이해안하고 가입(2점)	대략 이해 후 가입(3점)	충분히 이해 후 가입(4점)	평균 (4점만점)
보장성보험	1.7	12.8	73.0	12.5	2.96
1) 종신보험	5.3	21.1	61.4	12.3	2.81
2) 정기보험	20.0	0.0	80.0	0.0	2.60
3) 질병보험	2.3	12.8	69.8	15.1	2.98
4) 통합보험	0.0	14.1	76.6	9.4	2.95
5) 상해보험	0.0	18.8	73.4	7.8	2.89
6) 어린이보험	1.4	7.2	72.5	18.8	3.09
7) 실손의료비보험	1.1	9.9	77.9	11.0	2.99
8) 기타 보장성보험	0.0	15.8	63.2	21.1	3.05
저축성보험	0.5	10.2	67.3	22.0	3.11
1) 연금저축	0.0	15.2	60.6	24.2	3.09
2) 일반 및 변액연금	4.0	4.0	80.0	12.0	3.00
3) (변액)유니버설 보험	0.0	11.1	66.7	22.2	3.11
4) 저축보험	0.0	7.7	69.2	23.1	3.15
잘 모르겠다	2.8	18.4	67.2	11.6	2.88
전체	1.7	13.7	70.4	14.2	2.97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소비자들은 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들을 통해 상품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어 계약에 대한 별 이해 없이 보험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보험계약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

-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아(100점 만점에 평균 64점) 주관적인 평가와 다르게 나타남.
- 주관적인 평가는 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 즉 보험료, 보험기간, 보장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임.
- 보험청약 및 계약의 유지와 해지 등의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았으나 계약의 효력이나 고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표 3-12>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

(단위:%)

문항내용	정답률
6. 보험청약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O)	94.2
10.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O)	93.0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O)	88.9
5.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지났더라도,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O)	86.1
8.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O)	83.6
2. 보험계약일은 청약서를 작성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낸 날이다. (O)	82.0
3.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청약 후 15일 이내이다. (O)	76.3
4. 청약 철회시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O)	69.4
9. 보험계약은 일단 효력이 상실되면 다시 부활될 수 없다. (X)	62.6
7. 보험설계사에게 과거병력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O)	49.5
평균 (100점만점)	63.4(12.6)

IV. 보험 상품 가용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상에서 살펴본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비교공시정보와 보험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행태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1) 보험 가입의 합리성 제고와 관련된 문제점

1)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지식 필요

- 현행 보험 상품 정보(비교)공시 시스템은 보험 및 보험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선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보험제도나 상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의 보험 상품 정보공시 시스템이 보험소비자의 보험 상품 구입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와 같은 점은 앞에서 서술한 바 있는 맞춤형 보험 상품 선택(자문) 예시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보험 상품 (비교)공시정보 활용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음.
- 맞춤형 보험 상품 자문 예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반 보험소비자들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 즉 연령, 소득, 가족 구성, 재산, 이미 가입한 보험 상품 등을 토대로 보험 상품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임. ,
- 그에 비해 현행 공시 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상품 공시정보 활용법 5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임.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재수요의 특성을 가진 보험의 성격상 보험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조차 올바로 인식하기 쉽지 않음.
-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행의 보험공시 시스템은 리스크관리방법의 한 가지로서 보험을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와 합리성을 가진 보험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효용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일반 보험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임. 다시 말해서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공시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음.
- 그와 같은 점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료 비교공시정보 활용방법 예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
- 예시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간 보험료 및 수수료 등의 비교과정을 단계별로 뺏아가면서 상품의 내용 및 가격조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념 혹은 용어들에 대해 그때그때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음.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비교정보가 공시되어 있고 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

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¹⁸⁾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임.

- 보험 상품 비교공시의 목적은, “각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보다 유용한 상품비교 자료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임.¹⁹⁾ 그런데 현행 공시 시스템은 상품비교 자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보험소비자의 ‘실질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우리나라 보험소비자의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²⁰⁾ 특정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객관성이 있는지 보험소비자가 직접 확인, 비교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보험 가입 목적 달성에 제한적 효과

- 현행 보험 상품 정보(비교)공시 시스템은 그 목적이 상품 및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두어져 있음. 그러나 보험 상품은 무형재, 장기신용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품과 가격은 보험소비자 가치 달성의 한 축에 불과함.
-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보장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업자의 지급능력 확보, 그리고 보장내용에 부합하는 보상관행 등 상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이 필수적임. 설사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현행의 보험 상품 공시 및 비교공시 시스템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애초 기대한 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계약유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확인 불가능함.
- 물론 앞서 언급한대로 그런 정보들이 상품(비교)정보의 영역 밖인 것은 분명하지만, 보험 상품 비교공시의 목적이 ‘보험소비자의 실질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백함. 극단적인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보장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정보공시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보상에 있어서는 더 까다로울 수 있음.²¹⁾ 그럴 경

18)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를 들 수 있음. 공시가 단순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에 비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상품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자문서비스를 의미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민규,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개선방향: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11. 4. 참조

19)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상품비교공시안내의 목적 부분에서 인용

20) 우리나라 보험소비자들은 생명, 손해 구분 없이 95% 이상이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김대환·최원, 전계서, 7쪽 참조.

21) 생산원가를 사업자가 사전에 부담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생산원가가 미래에 발생하는 보험 상품의 특성

우 비교공시정보만을 활용한 상품 선택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도 가능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금융소비자포털도 그런 점을 감안하여 금융상품비교 항목과 더불어 금융회사 경영정보 및 금융회사 민원·제재·소송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상품 공시정보 활용법 5단계」의 네 번째 단계도 각종 비계량정보 및 사업자의 안전성·건전성을 확인하기를 권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포털의 금융회사 경영정보는 대략적인 재무 상황만을 보여줌으로써 보험사업자의 안전성·건전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함. 금융회사 민원·제재·소송 항목 역시 보상 및 계약관련 서비스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또 보상관행이나 계약유지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비교공시정보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적인 구별이 안 되어 있어 상품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어쨌든 상품 관련 정보가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정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보험 상품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된 의사결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행 시스템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그런 점에서 현행 공시 시스템은 상품(비교)정보 공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보의 유용성은 소비자정보처리 능력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정보의 질이라고 할 수 있음. 좋은 질의 소비자정보란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가 사용하기 쉽고, 즉시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하고 단순한 형태로 제시되는 것으로 이해의 용이성 측면에서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공시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정보공급자 위주

- 현행의 (비교)공시 시스템은 이용자인 보험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좀 더 높임으로써 (비교)공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상품 공시정보 활용법 5단계」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데 번거로움 없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임. 비교공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보험업협회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금융소비자포털을 주로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음.
-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료 비교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 「보험료 공시자료 활용방법」에 예시된 사례들을 보면, 보험료 한 가지만 비교하기 위해서도 보험협회 홈페이지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번갈아가면서 들락거려야 함. 예를 들어 특정 보험 상품의 회사별 상품요약서 내용을 비교하려면, 보험협회 항목별 비교정보에서 해당 상품을 클릭해서 그 상품

상 가격 할인이 미흡한 보상이라는 형태로 사후에 보험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음.

을 판매하는 회사의 상품공시실 상품요약서로 들어가야 함. 따라서 비교하고자 하는 상품 수 만큼 보험협회 홈페이지와 회사별 홈페이지를 오가야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그 이전에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가격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음. 보험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보험소비자가 아니라면, 저축성/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도 그냥 보험료 한 가지만 비교하고 말 가능성이 크도록 되어 있음.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보험료 공시자료 활용방법」에 예시된 사례들을 보면, 저축성/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보험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모두 비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이 그리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임.

(2) 개선방안

- 보험소비자가 비교공시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앞서 예시한 맞춤형 보험 상품 자문 사례와 같은 결과임.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은 보험소비자의 기본 지식을 전제로 할 때에야 가능한 결과이므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혹은 별도의 독립적 보험자문서비스의 필요성²²⁾을 환기시켜주는 사례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현행 공시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일반 보험소비자의 지식 수준을 전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비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우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보험료 공시자료 활용방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을 공시 시스템에서 채택하는 것임.

- 그렇게 하면 보험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험소비자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와 같은 개선은 기존의 공시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상품 및 가격의 토대가 되는 지급능력이나 보상 및 계약관련 서비스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시스템 내에서 유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생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보장이라는 비교공시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보험소비자가 서로 다른 사이트들을 번갈아 방문하거나 마

22) 금융 혹은 소비자 관련 학회 같은 중립적인 민간 전문단체에서 공시정보 및 추가적 전문정보를 토대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우스를 클릭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처럼 보험소비자의 조건과 무관하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 정보 제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표준화 정도가 높고 비교해야 할 항목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지금도 공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번에 쉽게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자동차보험에 비해 복잡하고 비교해야 할 항목 수가 많은 다른 상품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은 사실임. 그러나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연계가 가능한 항목들을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저축성/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에 보험가격 비교에 필요한 항목을 한데 묶어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그럴 경우 공시 시스템 내에서 정보가 중복 제공될 수는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효과성이 훨씬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또 영국과 캐나다에서 일반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대화형 선택방식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것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음.²³⁾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 공시 시스템의 시작 페이지에서 보험소비자가 본인의 제반 조건, 즉 연령,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의 조건들을 입력하게 하고, 그에 대해 유사한 조건들을 가진 보험소비자가 평균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수나 담보위험의 종류, 보험료 지출수준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면 보험소비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의 종류나 가입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상품 공시정보 활용법 5단계」의 첫 번째 단계, 즉 보험소비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 적합한 상품의 선택과정의 합리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임.

2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민규, 전개서 참조

<첨부 1>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현황(<http://pub.insure.or.kr/>)

1) 상품비교(일반)

- 회사명(23개 생명보험사), 채널(대면, 방카슈랑스, TM/CM/기타), 변액(변액, 비변액), 유니버셜(유니버셜, 비유니버셜), 금리부가방식(금리연동, 금리확정, 자산연계, 변액), 보종(보장성, 저축성), 구분상세A, B, C로 항목 구성
- 구분상세A, B, C는 보종구분(보장성, 저축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분류
보장성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반정기, 갱신형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무진단무심사, 무해지환급
	질병보험	암보험, 기타질병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CI보험	(화정형, 금리연동형)	
	상해보험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어린이보험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실손의료비보험		
	기타보장성보험		
저축성 (금리확정)	산출형		
저축성 (금리연동)	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	적립형, 거치형, 즉시형	
	유니버셜보험	적립형, 거치형	
	변액유니버셜보험		
	저축보험	일반저축보험, 유니버셜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위의 표는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함. 그런데 실제 비교공시 웹사이트에서 항목선택을 하는 경우, 상위분류항목과 하위분류항목이 반드시 표와 일치하지는 않아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음.
- 검색 내용: 회사명, 상품명, 채널, 변액여부, 유니버셜여부, 금리부가방식, 보종, 구분상세 ABC, 자사코드, 판매개시일, 최저이율, 공시이율, 경과기간에 따른 모집수수료율, 해지환급금(유지기간별 남녀), 보험료지수, 보험료(납입방법별 40세 남녀기준), 공제금액 구분공시, 상품요약서, 특이사항[필수기

재사항(가입연령, 보험기간), 선택

2)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The screenshot shows the 'Product Comparison Public Notice' section of the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s websit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tabs for '상품비교공시' (Product Comparison Public Notice), '경영공시' (Operational Public Notice), and '기타공시' (Other Public Notices). Below the tabs are buttons for '경기공시' (Regional Public Notice) and '수시공시' (Ongoing Public Noti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일별 수익률 비교' (Comparison of Daily Yield Rates). It features a search form with fields for '기준일자' (Reference Date), '회사명' (Company Name), '보종구분' (Product Category), '상품명' (Product Name), '펀드유형1' (Fund Type 1), and '펀드유형2' (Fund Type 2). A note below the search form states: '* 조건지정없이 조회를 누르면 전체상품이 바로 나타납니다.' (If you search without conditions, all products will be displayed immediately). Below the search form is a table with columns: '회사명' (Company Name), '펀드명' (Fund Name), '설정일' (Establishment Date), and '수익률' (Yield Rate). The yield rate columns are labeled '1개월' (1 Month), '3개월' (3 Months), '6개월' (6 Months), and '1년' (1 Year). A note below the table states: '* 수수료는 펀드별 운용보수와 수탁보수의 합계입니다.' (Management fees and trustee fees are the sum of the fees for each fund). Another note states: '* 카디프생명의 미국혼합형(원화)와 미국혼합형(달러화)는 동일한 펀드이며, 계약자 귀속 수익률은 달러화 공시기준이므로 원화수익률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Cardif Life's US mixed-type (Korean Won) and US mixed-type (Dollar) are the same fund, so the yield rate is based on the US dollar exchange rate. Please refer to the Korean Won yield rate). The left sidebar contain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to various product categories: 상품비교 (Product Comparison),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Retirement Income Product with Actual Performance Distribution), 연금저축보험 (Pension Savings Insurance), 자산연계형 (Asset-Linked Type), 퇴직연금사업자 (Retirement Income Service Provider), 방카모집수수료율 (Fees for Agent Recruitment), and 실손상품 (Healthcare Products).

- 기준 일자, 회사명, 보종구분, 상품명, 펀드명, 펀드유형[투자지역(국내/해외/해외혼합), 펀드종류(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1/채권혼합형2/채권형/MMF형/커머더티형/리츠형/기타)], 펀드명

- 검색 내용: 회사명, 펀드명, 설정일, 수익률(기간별), 연환산수익률, 기준가격, 전일대비등락, 순자산, 수수료, 펀드유형, 수탁회사, 운용회사, 상품명, 산구성추이, 일별 자산 세부내역, 월별 자산 세부내역, 특별계정 기본정보, 펀드구성 상품목록(아래 그림 참조), 운용설명서

<변액보험 자산구성내역 공시>

인덱스혼합형 III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펀드정보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이다.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KOSPI200지수 등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기준가				
금일 기준가	기준일	기준가격	전일대비등락	
1,425.17 (원, \$) ▼2.56	2011/07/12	1,425.17	▼2.56	
	2011/07/11	1,427.73	▲0.05	
	2011/07/10	1,427.68	▲0.06	
	2011/07/09	1,427.62	▲0.44	
	2011/07/08	1,427.18	▼0.95	
	2011/07/07	1,428.13	▲1.90	
	2011/07/06	1,426.23	▲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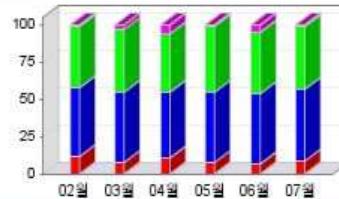
기본정보	
펀드유형1	국내투자
펀드유형2	채권혼합형
최초설정일	2009/04/01
순자산총액	28,181(백만)
잔존좌수	19,774(백만)

기본 수익률 자산구성내역

*자산구성내역(20110712 기준)

유동성	주식	채권	수익증권	기타
8.8	48.2	42.1	0.0	0.9

*자산 투자비율(최근6개월)



■ 유동
■ 주식
■ 채권
■ 수익
■ 해외
■ 기타

*유가증권 상위 10종목(20110501기준) (단위:백만원)

종목명	유가증권종류	장부가액
콜론(우리투자증권)	유동자산(CA...)	2,900
국고채권0450-1503	채권(국채)	2,349
국고채권0500-1409	채권(국채)	1,711
삼성전자우	주식(KSE)	1,312
국고채권0400-1509	채권(국채)	1,303
KB금융	주식(KSE)	1,149
국고채권0475-1403	채권(국채)	1,028
통안0362-1204-01	채권(통안채...)	1,001
국고채권0300-1312	채권(국채)	994
현대차2우B	주식(KSE)	971

유동성자산 비중 채권 비중 수익증권 비중

종류	비중	종류	비중	종류	비중
어음	0.0	국공채	78.2	주식형	0.0
콜론	96.0	금융채	0.0	채권형	0.0
예금	4.0	회사채	0.0	혼합형	0.0
기타	0.0	특수채	21.8	MMF	0.0
		기타	0.0	기타	0.0
				(해외증권)	0.0

3) 연금 상품

상품 비교 공시

상품비교공시 | **경영공시** | **기타공시**

상품비교 | 변액보험 |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연금저축보험 | 자산연계형 | 퇴직연금사업자 | 방카모집수수료율 | 실손상품

연금저축 비교

※ 기준년월 : 2011년 05월

* 조건지정없이 조회를 누르면 전체상품이 바로 나타납니다.

회사명	상품명	구분(연동형/ 확장형)	판매개시일	판매종료일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	6개월이율
대한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신공시미률Ⅲ(1개월))	연동형	2008-04-01	2009-09-31	2	4.7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신공시미률Ⅱ(1개월))	연동형	2004-07-01	2008-03-31	2	4.7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신공시미률Ⅳ(1개월))	연동형	2009-10-01	0000-00-00	2	4.7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신공시미률-3개월)	연동형	2001-04-01	2004-06-30	2	4.7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공시미률Ⅴ-3개월)	연동형	2001-01-31	2001-03-31	4	3.8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공시미률Ⅲ(1개월))	연동형	2008-04-01	2009-09-31	2	4.7	
	연금저축 하이드림Free연금(신공시미률Ⅲ(1개월))	연동형	2006-02-01	2006-03-31	2	4.7	
	연금저축 하이드림Free연금(신공시미률Ⅱ(1개월))	연동형	2009-10-01	0000-00-00	2	4.7	
	연금저축 하이드림Free연금(신공시미률Ⅳ(1개월))	연동형	2001-01-06	2001-03-02	5.5	5.5	
				2008-04-01	2009-09-31	2	4.7
			2005-09-23	2008-03-31	2	4.7	
			2009-10-01	0000-00-00	2	4.7	

- 기준연월, 회사명, 상품명, 구분(연동형/확장형), 판매개시일, 판매종료일,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3년간 평균공시이율,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자산구성내역, 책임준비금(마지막 두 항목은 지침에는 있으나, 비교공시사이트에서는 발견 못함)

4) 자산연계형

상품 비교 공시

상품비교공시 | **경영공시** | **기타공시**

상품비교 | 변액보험 |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연금저축보험 | 자산연계형 | 퇴직연금사업자 | 방카모집수수료율 | 실손상품

판매상품

※ 조건지정없이 조회를 누르면 전체상품이 바로 나타납니다.

회사명	전체	상품유형A	전체	상품유형B	전체	조회		
판매시작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판매종료일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기준년월	2011-05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회사명	판매여부	개별상품/ 통합운용상품	상품명	상품유형A	상품유형B	판매시작일	판매종료일	공시이율

- 회사명, 상품유형A(주가지수연계, 기타지수, 채권금리), 상품유형B(주가지수의 경우, cap/floor, 기타지수, 상승/하락), 판매시작일, 판매종료일, 기준 연월
- 검색 내용: 회사명, 판매여부, 개별상품/통합운용상품, 상품명, 상품유형, 판매시작일, 판매종료일,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자산구성내역, 월말책임준비금

5) 퇴직연금사업자

상품비교협회 | **상품비교공시** | **경영공시** | **기타공시**

• 사외이사공시 • 계약대출금리 • 불완전판매비율

상품비교공시 | **운용금액 및 수익률관리**

• 홈 > 상품비교공시 >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금액 및 수익률관리

기준년월: 2011-06 | 회사명: 선택 | 조회

* 조건지정없이 조회를 누르면 전체상품이 바로 나타납니다. (단위: 억원, %)

회사명	구분	2011-06		2010년도		운용개시일
		적립금	수익률	적립금	수익률	

- 기준연월, 회사명, 구분(원리금보장, 비원리금보장, 기타), DB/DC/IRA 별로 적립금, 수익률, 운용개시일,

6) 방카모집수수료율

상품비교협회 | **상품비교공시** | **경영공시** | **기타공시**

• 상품비교 • 변액보험 •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연금저축보험 • 자산연계형 • 퇴직연금사업자 • 방카모집수수료율 • 실손상품

상품비교공시 | **상품별 비교**

• 홈 > 상품비교공시 > 방카모집수수료율 > 상품별 비교

상품군: 선택 | 회사명: 전체 | 조회

* 조건지정없이 조회를 누르면 전체상품이 바로 나타납니다.

회사명	상품명	보험료		보험료		국민	기업	산업	외국계은행
		납입주기	납입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 상품군(교육보험, 연금보험, 생사흔합(장기), 생사흔합(단기), 보장성), 회사명
- 검색 내용: 회사명, 상품명,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별 모집수수료율

7) 실손상품 : 비교공시 안되어 있음

상품비교공시

• 상품비교 • 변액보험 •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연금저축보험 • 자산연계형 • 퇴직연금사업자 • 방카모집수수료율 • 실손상품

실손의료보험개요

• 홈 > 상품비교공시 > 실손상품 > 실손의료보험개요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입원', '통원', '처방조제'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하는 보험으로 종합형(입원), 종합형(통원), 질병형(입원), 질병형(통원), 상해형(입원), 상해형(통원) 등 6개 유형이 있다.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의 차이

구분	실손보험	정액보험
보험목적	비용손해 (금액으로 측정가능)	질병 또는 재해 (금액으로 측정 부적절)
보상금액	일정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	사전에 약정한 금액
보상범위	포괄주의 (보상하지 않은 항목 열거)	열거주의 (보상하는 항목 열거)
다수계약	각 계약의 지급액 합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례보상	증복에 관계없이 각 계약의 사전 약정금액을 보상
가입 시 처리		

8) 불완전판매비율

기타공시

• 사외이사공시 • 계약대출금리 •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비율공시

• 홈 > 기타공시 > 불완전판매비율 > 불완전판매비율공시

회사명

전체

기준년

2010

조회

(단위: %)

보험회사명	설계사	개인대리점	범인대리점					직영	
			방카	TM	홈쇼핑	기타	복합	다이렉트	
대한	2.82	2.48	0.47	2.17	1.76	2.12	-	1.24	
알리안츠	1.05	1.42	0.29	-	4.50	3.56	-	0.84	
삼성	0.32	0.56	0.44	0.52	2.27	0.54	-	-	
흥국	4.00	-	0.44	8.24	2.84	3.60	4.78	8.94	
교보	1.64	-	0.42	3.73	3.14	2.53	-	2.30	
신한	1.68	1.59	0.44	3.80	2.52	3.77	-	3.43	
녹십자	0.61	-	0.27	-	-	0.00	-	8.63	
KB	-	-	0.36	-	-	5.11	2.53	4.89	
우리아비바	1.82	1.41	0.28	9.98	3.10	4.35	-	4.63	
KDB	0.92	-	1.30	6.10	5.47	4.08	7.04	4.09	
미래에셋	0.40	-	0.34	-	-	1.12	-	0.51	
IBK연금	-	-	0.63	-	-	-	-	-	
라이나	0.29	-	0.20	0.31	0.22	0.34	-	0.26	
AIA	0.39	0.37	0.20	2.65	2.44	0.78	2.44	3.56	
푸르덴셜	0.05	-	-	-	-	0.25	-	-	
ING	0.35	-	0.42	-	-	-	-	3.96	
하나HSBC	0.38	-	0.31	-	-	5.39	-	2.23	

- 회사의 주요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및 생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

※ 주요모집채널: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슈랑스, TM, 홈쇼핑, 기타), 보험사 직영(복합, 다이렉트)

<첨부 2> 손해보험협회 비교공시 현황 (<http://www.knia.or.kr/public/>)



HOME 경영공시 사외이사공시 상품비교공시 자동차보험공시 방카모집수수료율

상품비교공시

화재보험

유의사항

가입기준

해지환급금 : 1·3·5·7·10년

비교공시표 보기

1) 장기손해보험

- 장기저축성보험과 장기보장성보험으로 분류: 저축성보험[화재보험, 종합보험, 상해(운전자)보험, 기타상해보험, 질병.간병보험, 연금저축 손해보험,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기타 보험], 보장성보험[화재보험, 종합보험, 상해(운전자)보험, 기타상해보험, 질병.간병보험, 기타 보험]
- 공시항목(아래 예시 그림 참조): 회사명, 상품명, 지급기준 및 보장내역, 특약, 공시이율(예정이율, 최저보증이율), 모집수수료율, 보험료(남녀), 해지환급금(유지기간별 남녀), 특이사항, 사업비등 공제금액 안내표

2) 보험료지수 및 연간보험료

가. 비교 보험사 및 보험 상품 선택

나. 비교결과

● 장기저축성 화재보험

회사명	상품명	지급기준 및 보장내역			특약	공시이율		보험료		해지환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보장부분 적용이율 (매경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보험 수수료율	남자	여자	유지 기간	남자	
메리츠 (무) 리치성공보험 1106	화재 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손해, 피 난손해에 따른 손 해	5,000만원 한도 1종 : 화재 임시주 거비 외 2종, 2종 : 구내 폭발, 파열손 해 외 7종	화재진화후 생긴 잔존물 제거비용 지급		4.0	5.0 (3.5/2.75)	2.64	200,000	200,000	1	1.31	
	잔존물제거비용										3	6.38	
한화손보 (무) 성공플랜저축보 험1106	화재 손해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 발생시	5,000만원 한도 증수재손해 외 27 종	화재진화후 생긴 잔존물 제거비용 지급		4.0	5.3 (3.5/2.75)	2.88	200,000	200,000	5	11.97	
											7	18.10	
											10	27.98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 손해보험협회 바로가기 전

HOME 경영공시 사외이사공시 상품비교공시 자동차보험공시 방카모집수수료율공시 공시규정자료실

상품비교공시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 발생시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Home > 상품비교공시 > 보험료지수 및 연간보험료 > 보험료지수 비교

보험료지수 비교공시

원하시는 보험사를 선택하세요.

보험사 선택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그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손보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더케이손보 차티스
에이스보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세요.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하이홀 (무)하이라이프으뜸플 더보기 +
동부화재 (무)비즈파트너보험1 (무)New행복가득우 더보기 +

3) 연금 상품, 자산연계형 보험 상품

- 회사명, 상품명, 상품구분(확정형/금리연동형), 판매개시일, 판매종료일, 기준연월,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이자율차배당률, 자산구성내역, 책임준비금

보험상품종류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하이총합보험 (Hi1106)		+ 더 보 기	동부화재 (무)New행복가득우리집보험1106		+ 더 보 기
	상품명	보험료지수 (%)		상품명	보험료지수 (%)	
● 적립부분	적립보험료	120.2		적립보험료	122.1	
⊕ 기본계약	화재손해	120.0		화재손해(실손)	120	
⊕ 사망당보	상해사망	120.2		상해사망	122.9	
⊕ 전단당보	골절진단	120.2		중대한 화상및부식진단비	123.3	
⊕ 수술당보	상해흉터성형수술	119.7				
⊕ 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20.2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21.9	
⊕ 비용당보	화재별금	100		강력범죄피해보험금	125	
⊕ 재물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	120		붕괴,침강,사태손해(실손)	130	
⊕ 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120.3		화재대물배상책임	114.3	
산출기준	* 40세, 남자, 상해 1급, 5년 만기 전기납					

▼ 연금보험

- 안내 ·
- 연금상품의 특징 ·
- 연금상품비교 ·
- 공시이율 ·
- 회사별 자산구성 현황 ·
- 관련사이트링크 ·

▶ 퇴직연금사업자공시

▶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자산연계형보험

▶ 실손의료보험

▶ 보험계약대출금리

▶ 불완전판매비율

▶ 연금상품비교 ·

▶ 공시이율 ·

▶ 회사별 자산구성 현황 ·

▶ 관련사이트링크 ·

▶ 퇴직연금사업자공시

▶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난연계형보험

▶ 손의료보험

▶ 험계약대출금리

▶ 관전판매비율

[외관](#) [상세](#) [다운로드](#)
기준월 : 2011년 05월 (단위:천원,%) [큰형으로보기](#)

회사명	상품명	판매 개시일	판매 종료일	상품 종류	금리 구분	최저 보증 이율	월말 책임준비금		공 이
							월말책임 준비금	현.예금	
메리츠	신홀런인생	19970701	19990201	구연금	확정형	7.5	1,678,447		
메리츠	신실버그린	19970701	19990501	구연금	연동형	4	23,783,798		
메리츠	노후안심II	19990501	20000501	구연금	연동형	4	15,658,266		
메리츠	실버그린II	19990501	20000501	구연금	연동형	4	24,292,125		
메리츠	노후생활지킴이	20010131	20010501	신연금	연동형	4	14,894,386		
메리츠	노후생활지킴이II	20010501	20011101	신연금	연동형	2	17,596,864		
메리츠	노후생활지킴이III	20011101	20021231	신연금	연동형	2	21,490,070		
메리츠	노후생활지킴이IV	20021231	20031001	신연금	연동형	2	14,835,247		
메리츠	노후생활지킴이V	20031001	20050501	신연금	연동형	2	11,362,707		
메리츠	더블안심연금	20040105	20050501	신연금	연동형	2	42,302,605		
메리츠	더블안심연금보험050..	20050501	20060401	신연금	연동형	2	11,530,659		
메리츠	노후생활지킴이0505	20050501	20060401	신연금	연동형	2	6,207,582		
메리츠	노후생활지킴이0604	20060401	20071001	신연금	연동형	2	10,462,282		
회사명	월말책임 준비금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회사명	월말책임 준비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		
메리츠	684,591,477	88,719,983	11.28	584,017,578	74.27	84,331,763	1		
한화손보	202,545,368	12,901,554	2.69	372,363,250	77.65	44,385,259			
롯데손보	201,870,656	70,894,253	35.49	93,463,171	46.79	12,949,800			
그린손보	57,548,299	40,094,119	58.89	19,723,892	28.97	6,236,995			
흥국화재	161,304,590	45,433,915	24.9	103,228,710	59.85	17,244,596			
한화(구)제일	255,359,752	12,901,554	2.69	372,363,250	77.65	44,385,259			
삼성화재	5,020,627,743	116,096,824	2.1	4,123,725,679	74.8	843,013,163			
현대해상	1,643,927,682	23,048,621	1.33	1,246,093,323	71.98	270,039,795			
LIG손보	1,403,762,294	158,479,135	10.6	824,351,929	55.3	370,305,202			
도보화재	1,227,890,320	139,620,140	10	795,423,529	59.93	207,215,179	1		

4)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보험료시구 · 보험료

연금보험

인내 ·
연금상품의 특징 ·
연금상품비교 ·
공시이율 ·
회사별 자산구성 현황 ·
관련사이트링크 ·

퇴직연금사업자공시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자산연계형보험

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대출금리

불완전판매비율

구연금 신연금

연금저축 손해보험 예정이율(신개인연금)

회원사 상품명 Q 조회

기준월 : 2011년 05월 (단위:천원 %) □ 쿠너으로보기

회사명	상품명	201105	201104	201103	201102	201101	201012	201011	201010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Y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더블안심연금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더블안심연금보험050..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0505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0604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더블안심연금보험060..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0710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0804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0904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0908	3.9	3.9	3.9	3.9	3.9	3.9	3.9	3.9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0910	4.8	4.8	4.9	4.9	4.9	4.9	4.9	4.9
메리츠	노후생활자금이1004	4.8	4.8	4.9	4.9	4.9	4.9	4.9	4.9

- 회사별, 제도별(원리금보장, 비원리금보장, 기타), DC/DB/IRA별, 적립금, 수익률 공시

5)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회사명, 계정구분(채권형, 주식형 등), 상품명, 펀드설정일, 기준일자, 기준가격, 매월말자산구성내역, 기간수익률, 연환산수익률, 수수료율, 기준가격 변동추이, 특정기간 수익률, 자산구성내역 변동추이,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운용설명서

6) 실손의료보험

- 회사명, 상품유형(종합입원형, 종합통원형,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품명, 예정이율, 보험료(연령별 남녀), 특이사항

7) 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

- 주요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과 손보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을 함께 기재
 ※ 주요 모집채널 :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슈랑스, TM, 홈쇼핑, 기타), 보험사 직영(복합, 다이렉트)

8) 기타: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 보험계약대출금리

<첨부 3> 보험사업자 비교공시 현황

(1) 생명보험사(협회 회원사 대상) 비교공시(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 현황(홈페이지)

보험사	비교공시 내용
AIA생명보험	<p>□ 아래의 상품들에 대해 보험료납입주기(일시납, 연납, 월납), 보험료 납입기간(일시납, 3~15년납),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보험(연금):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 무배당 골든차이나 연금보험, 무배당 스텝업 연금보험 - 생사혼합보험(장기): 무배당 슈퍼스타 변액유니버설 보험 - 보장성보험: 무배당 뉴 빅스타 3대 질병보험(갱신형, 순수보장형), 무배당 빅스타2 암보험(1형, 만기축하금형), 무배당 빅스타2 암보험(2형, 순수보장형) <p>*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aia.co.kr/kr/provision-and-product-disclosure/bancassurance-commission-rate/</p>
녹십자생명	<p>□ 아래의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사혼합(단기): (무)뉴그린스페셜 저축보험Ⅲ, (무)뉴그린 재테크 보험, (무)그린피아 저축보험Ⅱ, (무)뉴스타트 저축보험Ⅱ - 생사혼합(장기): (무)뉴그린 스페셜 저축보험Ⅲ, (무)뉴그린 재테크보험, (무)그린피아 저축보험Ⅱ, (무)뉴스타트 저축보험Ⅱ - 생존보험(연금): 연금저축 마이플랜 연금보험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healthcare.co.kr/ 방카슈랑스 공시실</p>
카디프 생명보험	<p>□ 아래의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 증권)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사혼합(장기): 무배당 그랑프리 변액유니버설보험 II, 무배당 슈퍼플러스 변액연금보험 II, 무배당 비바(VIVA)저축보험Ⅲ, 무배당 리슈-플러스 저축보험 V, 무배당 스마트 변액유니버설보험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cardif.co.kr/index.jsp 공시실>방카슈랑스수수료율</p>
KB생명보험	<p>□ 아래의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보험(연금): 무배당KB챔피언변액연금보험Ⅱ, 무)KB플래티넘연금보험Ⅱ, 무)KBMVP즉시연금보험 - 생사혼합: 무)KB파워플러스저축보험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kbli.co.kr/ 공시실>방카슈랑스모집수수료율 공시실</p>
하나HSBC 생명보험	<p>□ 15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 증권, 저축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hanahsbclife.co.kr/index.jsp 공시실>방카슈랑스수수료율</p>
ING생명보험	<p>□ 10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p>*비교공시 웹사이트</p>

	http://www.inglife.co.kr/jsp/MH/announce/commission/index.jsp
ACE생명	*공시실은 있으나, 방카슈랑스모집수수료율이 공시되어 있지 않음
PCA생명	<input type="checkbox"/> 3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pcakorea.co.kr/webhp/servlet/pca.sfa.commonJspPage.controller.commonJspPageServlet?Menu1_ID=andat_03&Menu2_ID=&Menu3_ID=&Menu_ID=andat_03&Jsp_Yn=Y&Flash_Dep1=3&Flash_Dep2=6#
신한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9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shinhanlife.co.kr/common/announce/ann11_1.jsp?menu_idx=c
프루덴셜 생명보험	*공시실은 있으나, 방카슈랑스모집수수료율이 공시되어 있지 않음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prudential.co.kr/products/bnc.do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5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metlife.co.kr/ML09_HOME/announce/recruitFee/recruitfee.jsp
동양생명	<input type="checkbox"/> 10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myangel.co.kr/process/main 공시실>방카슈랑스모집수수료율공시실
동부생명	<input type="checkbox"/> 4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dongbulife.com/Private/Util/Ban_Rate.jsp
KDB 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3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kdblife.co.kr/disclosure/banca.asp
미래에셋 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5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life.miraeasset.com/ 공시실>방카슈랑스수수료율공시실
우리아비바 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4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wooriaviva.com/wvroot/Announce/Banca/banca.aspx
교보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4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kyobo.co.kr/KBLCM/pa/bankasuranceViw.do
흥국생명보험	<input type="checkbox"/> 8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hungkuk.co.kr/ 공시실>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 공시</p>
삼성생명보험	<p>□ 7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samsunglife.com/notice/banca/bancaFeeRate.html</p>
알리안츠 생명보험	<p>□ 4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allianzlife.co.kr/finsecustomer/LP/notice_banca_01.asp</p>
대한생명	<p>□ 6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korealife.com/ 공시실>방카슈랑스공시실</p>
IBK연금보험	<p>□ 7개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각 판매 금융기관(은행)별로 모집수수료율 공시</p> <p>*비교공시 웹사이트 http://www.ibki.co.kr/ 공시실>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p>

(2) 손해보험사(협회회원사, 재보험/보증보험사 제외) 비교공시(방카슈랑스모집수수료율) 현황(홈페이지)

보험사	내용
A C E A m e r i c a n I n s u r a n c e C o m p a n y	http://www.aceinsurance.co.kr/aceStatic/ACE%20Global/ACE-Korea/disclosure-information/commission-disclosure/Commission%20of%20General%20Insurance.pdf
동부화재	http://www.idongbu.com/etc/EtcCommission2.jsp
LIG손해보험	http://www.lig.co.kr/company/publish/commission_info/commission_info01.shtml
현대해상	http://www.hi.co.kr/company/ko/notice/commission/commissionView.jsp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publication/product/bancassuance/bancassurance_01.html
흥국화재	http://www.insurance.co.kr/ 공시실>상품공시
그린손해보험	http://www.greenfire.co.kr/ 상품공시>모집수수료율공시
롯데손해보험	http://www.lotteins.co.kr/index2.jsp 상품공시>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공시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index.jsp
메리츠화재해상보험	http://www.meritzfire.com/ 상품공시>모집수수료율 공시
악사다이렉트	공시실 있으나, 모집수수료율 공시 없음

K 손 해 보 험 에듀카	공시설 있으나, 모집수수료율 공시 없음
챠티스	공시설 있으나, 모집수수료율 공시 없음
에르고다움다 이렉트	공시설 있으나, 모집수수료율 공시 없음
현대하이카다 이렉트	공시설 있으나, 모집수수료율 공시 없음

◆ 찾아오는 길 ◆



◆ 교통편안내 ◆

*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약 250m)

종각역 5번 출구로 나와 30m 정도 직진 → 영풍문고를 끼고 우회전 → 청계천을 따라 110m 정도 직진
→ 좌측에 예금보험공사 위치(짙은 회색 대리석 건물)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약 400m)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로 나와 출구 방향으로 240m 정도 직진 → 광교사거리에서 대우조선해양 빌딩을
끼고 좌회전 → 청계천을 따라 110m 정도 직진 → 좌측에 예금보험공사 위치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약 450m)

광화문역 5번 출구로 나와 출구 방향으로 20m 정도 직진 → 동아일보를 끼고 좌회전 → 청계천을 따라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380m 정도 직진 → 우측에 예금보험공사 위치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4번 출구, 약 600m)을 통하여 모실 경우 도보로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

버스번호	첫차	막차	배차간격	노선
270	04:00	22:30	10분	상암차고지→서울역사박물관(경교장)→광화문→ 종로1가[하차] →종로2가→종로3가→종로4가. 종묘→종로5가→종로6가→동대문→승인동→신설동역→망우리고개
271	04:20	22:40	10분	용마문화복지센터→서일대학교→동대문→종로6가→종로5가→종로4가. 종묘→종로3가→종로2가→ 종로1가[하차] →광화문→서울역사박물관→성산초등학교입구→합정역
370	04:00	22:30	12분	강일리버파크6단지→강일리버파크8단지→동대문→종로6가→종로5가→종로4가. 종묘→종로3가→종로2가→ 종로1가[하차] →광화문→서울역사박물관→은평차고지
470	04:00	22:40	11분	상암차고지→서부면허시험장→서울역사박물관(경교장)→광화문→ 종로1가[하차] →종로2가→종로2가삼일교(중)→중앙극장. 백병원(중)→시민의숲
506	04:00	22:20	13분	신성초등학교→삼성동주민센터→숙대입구역(중)→갈월동(중)→서울역버스환승센터→시청앞→서울신문사→ 종로1가[하차] →을지로입구역. 광교→서울역버스환승센터
7018	04:30	23:00	15분	서부문수기점→북가좌소방파출소→통인시장. 종로보건소→적선동→세종문화회관→ 종로1가[하차] →무교동→광화문한국통신

- 종로1가 정류장에서 하차하셔서 5분정도 걸어모시면 됩니다.

◆ 문의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사무국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516호 (110-745)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사무국 조교 최유미

Tel: 02-760-1283

Fax: 02-766-0527

E-mail: lovejones55@naver.com/kafsc2010@naver.com

학회홈페이지: <http://www.financialconsumers.org/>